

2012

공통교재

재무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행정연수원 | 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공통교재

재무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행정연수원 | 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공통교재

재무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행정연수원 | 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공통교재

재무회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지방행정연수원 | 시·도 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윤리 헌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겨레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위해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 우리는 겨레의 엄숙한 소명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 우리는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겨레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1.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1.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1.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1.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1.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목차

| | |
|---------------------------------------|----|
| 제1장 개 요 | 1 |
| 제1절 재무회계제도의 의의 | 3 |
| 제2절 근거법령 | 5 |
| | |
| 제2장 재무회계제도의 주요내용 | 9 |
| 제1절 개 념 | 11 |
| 제2절 거래 및 회계처리 | 15 |
| 제3절 회계의 순환과정 | 17 |
| 제4절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해설 | 19 |
| 제5절 재무회계 정보의 활용 | 41 |
| 제6절 주요 외국의 재무회계(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 51 |
| | |
| 제3장 거래와 회계처리 | 53 |
| 제1절 수입거래의 회계처리 | 55 |
| 제2절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 60 |
| 제3절 자산의 분류와 건설중인 자산 등의 회계처리 | 69 |
| | |
| 제4장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 77 |

| | |
|-----------------------------------|-----|
| 제5장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해설 | 123 |
| 제1절 총칙 해설 | 125 |
| 제2절 원가의 계산 해설 | 134 |
| 제3절 원가정보의 활용 및 관리 해설 | 150 |
| 참고자료 | 157 |
| 1.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행 | 159 |
|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160 |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 187 |

제1장

개요

제1장 개요

제1절 재무회계제도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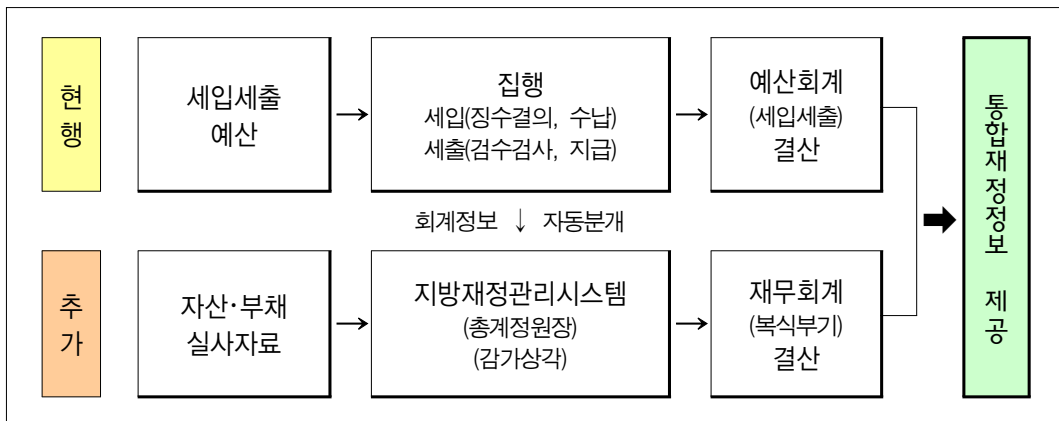
1. 의의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의 변동내역을 일반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2. 도입배경

- 1)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재정개혁시 채택하였고, 우리나라도 재정개혁을 위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7년 도입
- 2) 예산회계제도를 보완하여 재정의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제고
 - *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보완(Dual System)하는 제도
- 3) 국제 수준의 재무정보 인프라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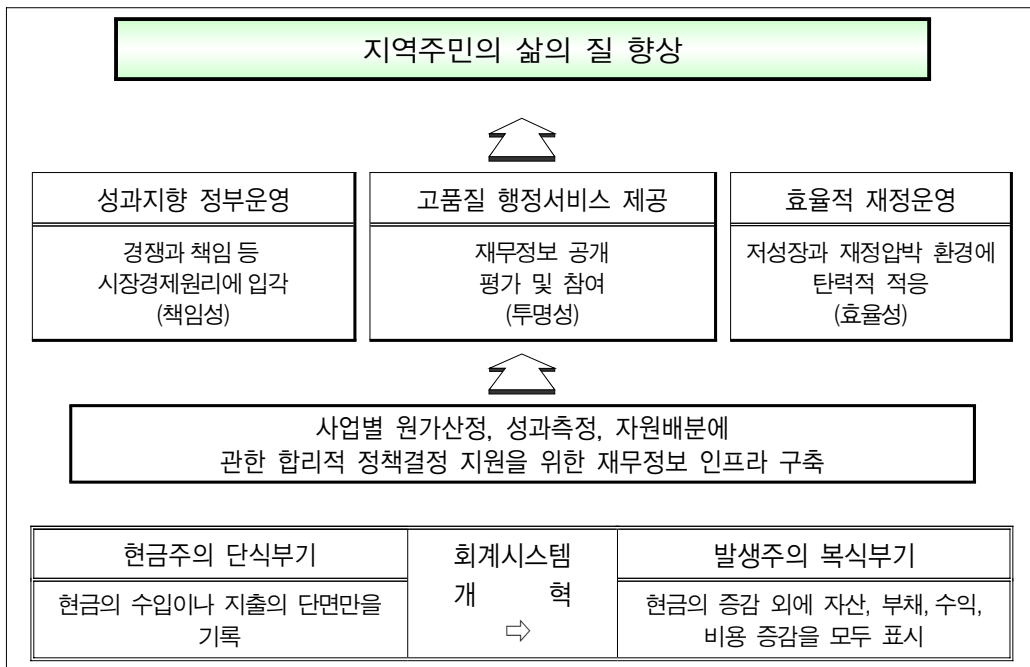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 구 분 | 예 산 회 계 | 재 무 회 계 |
|--------------|----------------------------------|--|
| 의 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결과 보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 |
| 회계방식 | 현금주의 단식부기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기업형) |
| 결 산 보 고 서 | 세입세출결산서(6종) | 재무보고서(재무제표 등) |
|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
| 가치지향 |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 통제, 법규 준수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
| 자기검증 기 능 | 없음 |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대차평균) |

〈재무회계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제2절 근거법령

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8.2.29, 시행일 2008.5.30).

2.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기준 제정 주체

- 가. 지방회계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
- 나. 자치단체 예산집행을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 다. 지방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를 실시함으로써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의성과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유사한 조직 간의 비교가능성을 도모함
- 라. 지방회계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

2) 지방회계기준의 목적

- 가. 지역주민에 대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
- 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를 위한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

3)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범위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함

- 가.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 광역자치단체
- 나. 시와 군 및 구(자치구) : 기초자치단체

4) 지방회계기준의 주요내용

| 조 문 | 주요 내용 |
|--|---|
|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 제정 목적, 기준의 적용, 용어의 정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을 기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하여 보고 |
|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제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 |
|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제25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상태보고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인식기준 • 재정상태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순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 및 분류 등을 기술 |
|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제3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운영보고서의 의미와 구성요소 및 측정기준과 표시구분 •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원가계산, 분류 등을 기술 |
|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제3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흐름보고서의 의미와 구분, 작성기준 등을 기술 |
|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제39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의미와 구성요소 등을 기술 |
| 제7장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제4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재무보고서의 의미와 작성지침 등을 기술 |

| 조 문 | 주요 내용 |
|-----------------------------------|--|
|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제6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 및 특수한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술 |
| 부 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일, 경과조치 등 |

※ 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 구 분 | 기업회계기준 | 지방회계기준 | |
|-------------|--|---|---|
| 적용대상 | 모든 영리기업 | 지방자치단체 | |
| 근거 법령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 지방재정법 제53조 | |
| 이해관계자 | 주주, 채권자, 일반투자자 등 | 지역주민, 지방의회 등 | |
| 재무제표의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식 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작성유예)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식 | |
| 수익·비용 대응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당기순이익 산출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적용 수익과 비용의 내역만을 보여줌 | |
| 자산의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분 제한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이 존재 | |
| 자본 |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 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
| | 구성 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일반순자산 |
| 공통점 |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책임 | | |

제2장

재무회계제도의 주요내용

제2장 재무회계제도의 주요내용

제1절 개념

1. 재무회계

경제주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가 발생한 시점(발생주의)에 거래의 인과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복식부기)에 의해 계리하는 회계처리제도

회계적 개념의 거래(transaction)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경제적 사건을 말함

1)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가. 현금주의(Cash basis)

- 현금주의는 현금이 유입되면 수입으로, 현금이 유출되면 지출로 인식함. 즉,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음

나. 발생주의(Accrual basis)

-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임.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에 인식되는 미수세금, 미수수익, 미지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의 발생주의 계정을 사용함

| 구 분 | 현금주의 | 발생주의 |
|--------------|----------------|----------------|
| 선급비용 선수수익 | 비용 인식 수익 인식 | 자산 인식 부채 인식 |
| 감가상각, 대손상각 | 인식 없음 | 비용 인식 |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가. 단식부기(Single entry book-keeping)

- 현금, 채권, 채무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거래의 한쪽 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으로 정부회계에서 사용하여 온 기록방식임

나. 복식부기(Double entry book-keeping)

- 하나의 거래를 둘 이상 계정(account)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임
- 복식부기에서는 모든 거래의 차변금액 합계와 대변금액 합계가 항상 일치하도록 기록하게 되며 이를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함

다. 대차평균의 원리

- 모든 계정의 차변합계금액과 대변합계금액이 일치하게 되며 각 계정의 잔액을 합계하는 경우 [자산 = 부채 + 순자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데 이를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함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가. 예산회계

- 예산회계는 세입예산액, 징수액, 수납액, 세출예산액, 예산배정 및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 및 반영하는 회계를 말함
- 예산회계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로 결산보고를 하게 되며, 예산회계의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을 사용함

나. 재무회계

- 정부회계에서 재무회계는 예산회계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기업회계에 준하여 자산이나 부채, 수익, 비용 등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회계

- 재무회계에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수익, 비용에 관한 재정상태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됨

2.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가. 재무제표는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원가개념 반영 재무제표상 재정운영결과 : '13.1.1이후 적용)이라는 6가지 요소로 구성됨
- 나.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됨

2) 자산(Assets)

- 가. 자산은 현금 뿐 아니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현재 정부에서 사용하는 재산 또는 물품보다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나. 자산의 정의 속에는 현금 뿐 아니라 채권(미수세금 등), 대여금(대부자산), 토지·건물·비품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는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을 포함

자산과 유사개념

- **공유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 **물 품**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유가증권 및 공유재산을 제외한 동산
- **채 권** :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 다. 재무회계의 자산 중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장·단기융자금, 일반미수금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에 권리에 해당하므로 예산회계의 채권과 대응되는 개념

3) 부채(Liabilities)

가. 부채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과 지방채증권 뿐 아니라 미지급채무(미지급금, 예수금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됨

나. 부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면,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의무”로 정의됨

부채와 유사개념

■ **채무부담행위** :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일종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구체적인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보지 않음. 다만,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되는 교환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

4) 순자산

가. 정부회계에서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자산 - 부채 = 순자산)을 말함

나. 정부회계의 순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장래 세대가 받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에 해당함

5) 수익

가.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함

나. 예산회계에서 수입이란 조세수입, 사용료·수수료, 보조금 등 현금의 유입

6) 비용

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형태로 나타나며,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함

나. 예산회계에서 지출이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출행위 등을 통한 현금의 유출

제2절 거래 및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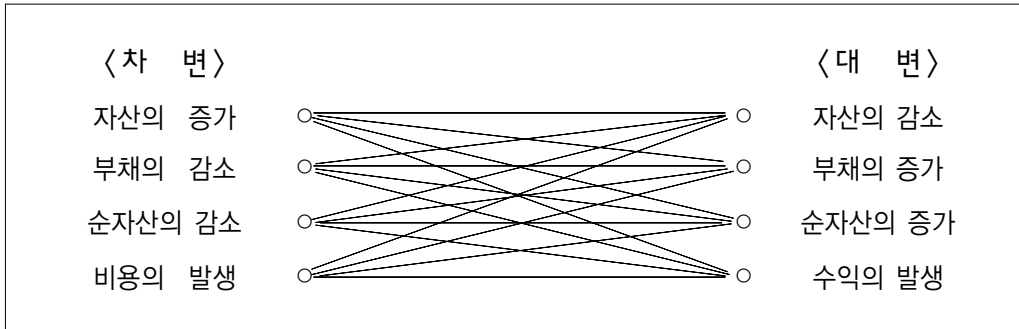
1. 재무회계과목

- 1) 재무회계과목이란 자산·부채·순자산·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Ledger)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의 명칭임
- 2) 재무보고서에 보고되는 과목과 원장에 나타나는 과목이 있음. 이때 일반적으로 재무보고서에 보고용으로 나타나는 과목이 회계과목이며, 원장에 나타나는 세부과목은 관리과목임
- 3) 회계과목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관리과목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회 계 과 목 | 관 리 과 목 | 비 고 |
|---------|--------------|----------|
| 토 지 | 토 지 | 1 : 1 구조 |
| 단기 융자금 | 단기 민간융자금 | 1 : N 구조 |
| | 단기 자치단체간융자금 | |
| | 단기 예탁금 | |
| | 단기 지방공공기관융자금 | |

2. 분개의 법칙

분개는 거래 내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거래의 8요소에 따른 결합관계를 차변과 대변의 해당 계정과목에 의해 나타내는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구조임



3. 거래의 종류

| 구 분 | | 비 고 |
|-------|---------|-----------|
| 예산거래 | 수 입 거 래 | 세입예산 편성항목 |
| | 지 출 거 래 | 세출예산 편성항목 |
| 예산외거래 | 결산보정거래 | 결산항목 |
| | 기타예산외거래 | 세입세출외현금 등 |

1) 예산거래 :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거래

가. 수입거래

- 세입예산으로 편성된(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등) 항목의 거래임
-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세입행위시(징수결정, 감액, 수납, 과오납 환부 및 결손처분)임

나. 지출거래

- 세출예산으로 편성된(인건비, 물건비 등) 항목의 거래임
-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 시점은 지출행위시(검수·검사, 지급명령)임

2) 예산외거래

현행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으나 회계적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요구되는 항목에 대한 거래

가. 결산보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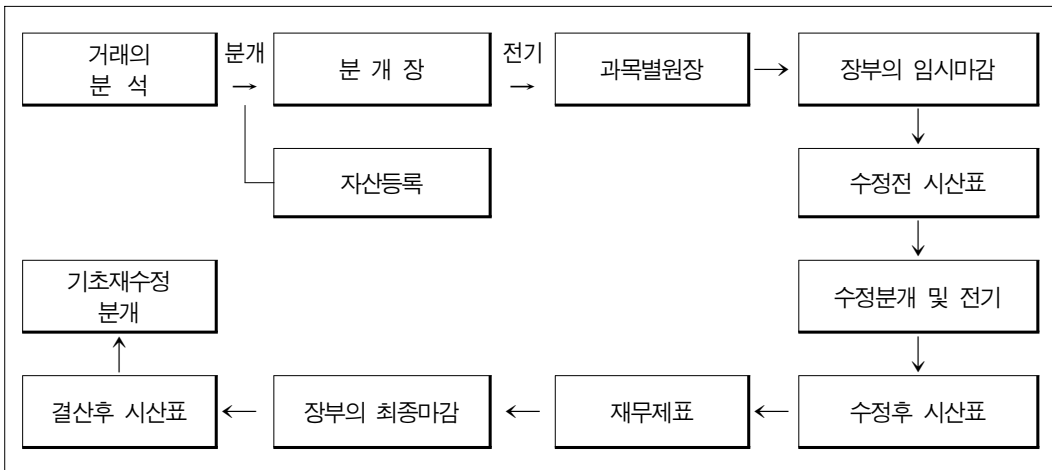
- 재무제표 확정을 위해 처리되어야 하는 거래, 즉 재무회계 결산을 위한 결산정리 분개로 결산시점에서 회계처리
- 지방채 만기 재분류, 수익·비용 항목 정리,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설정 등

나. 기타예산외거래

- 예산외거래 중 결산보정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세입세출외현금과 기부채납 등의 거래로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회계처리함
- 기부채납, 교환, 세입세출외현금 등

제3절 회계의 순환과정

1. 회계 처리 흐름도



2. 분개장

- 1) 분개장은 회계자료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최초로 기록하는 장부임
가. 하나의 거래를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따로 기록함
나. 거래내역의 발생 순서별로 기록함
- 2) 거래가 다양하고 분량이 많은 기업에서는 분개장 대신에 전표를 사용

3. 원장과 전기

- 1) 원장 : 계정과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모아 놓은 회계장부
- 2) 전기(轉記) : 분개의 내용을 각 계정별로 집계하기 위하여 해당계정에 기록

4. 시산표의 작성

시산표는 대차금액 일치에 원리에 의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오류를 검증함. 시산표의 차변잔액은 자산과 비용, 대변 잔액은 부채, 순자산, 수익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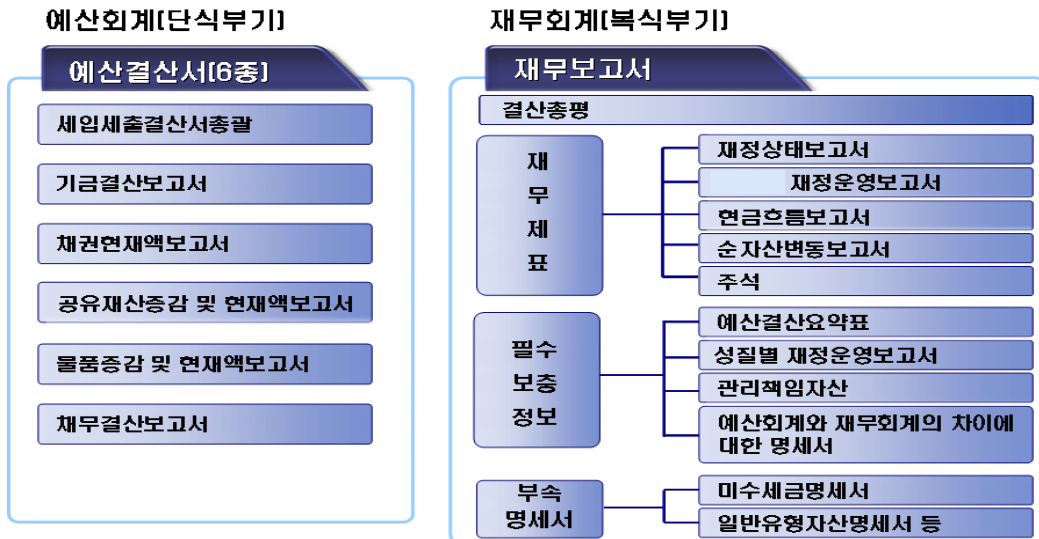
5.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 1) 결산 : 회계기말에 수정분개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임
- 2) 결산 및 재무보고서의 작성은 매년 1회 결산부서에서 총괄 작성

제4절 재무보고서의 구성과 해설

1. 재무보고서의 구성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결산서 비교〉



1) 결산 총평

- 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및 통계자료 등의 설명 자료
- 나. 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 특징사항,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
- 다. 주요 특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요,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함
- 라. 재무분석 및 통계자료는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¹⁾ 및 통계자료를 말함

1) 기업회계 재정지표 및 주요 외국의 재정지표를 비교·연구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 재무분석지표(3개 분야 29개 지표) 개발('08.5. 행정안전부)

2) 재무제표

- 가.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및 순자산변동보고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함
- 나. 그 중에서 재정상태보고서와 재정운영보고서가 특히 중요.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식에 의하여 통합하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함
- 다. 재무제표는 해당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

(1) 재정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가)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회계연도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
- 나) 재정상태보고서는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음

(2) 재정운영보고서(Government's Operating Statement)

- 가)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수익·비용의 발생상황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
- 나) 플로우(flow) 정보로서 ‘일정 기간’의 재정성과를 나타내며,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운영차액으로 표시
- 다) 2009회계연도부터는 비용, 수익, 운영차액 순으로 보고서 형식을 개정

※ 원가개념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 재정운영순원가, 일반수익, 재정운영결과 순으로 보고서 형식 개정

(3) 현금흐름보고서(Statement of Cash Flows)

가)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무보고실체의 당해 사업기간 동안의 ① 정상활동(주로 수익·비용 변동), ② 투자활동(주로 자산 변동), ③ 재무활동(주로 부채 변동) 등을 구분하여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나) 지방회계기준(부칙 제1항)에 따르면 현금흐름보고서의 재무제표 계상시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의 경우 현금흐름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음

(4) 주식(Note)

가) 재무제표에 대한 주식은 재무보고서의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가 제공되고 재무제표의 각 과목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계정과목의 정의 및 재무보고실체의 중요한 회계처리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첨부자료임

나) 주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계정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

다) 2009회계연도부터 기존의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및 내역에 대한 주식 표시사항을 삭제

<예시 : 주식 표시사항(지방회계기준 제41조)>

-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 ② 삭제²⁾
- ③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2) 2009.12.31개정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삭제

- ④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⑤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 등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 ⑥ 무상사용허가권이 부여된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 ⑦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필수보충정보

- 가. 필수보충정보란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함
- 나. 예컨대 ① 예산결산요약표, ②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③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④ 개별 회계실체의 재정운영보고서, ⑤ 관리책임자산, ⑥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⑦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등

4) 부속명세서

- 가.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와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는 ① 일반 유형자산명세서, ② 주민편의시설명세서, ③ 사회기반시설명세서, ④ 감가상각명세서, ⑤ 회계별 재무제표 총괄요약 명세서, ⑥ 주석으로 표시할 경우 부속명세서에서 생략가능한 명세서³⁾ 등을 부속명세서로 규정

3) 미수세금명세서, 미수세의수입금명세서, 대여금명세서, 전출금명세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장기차입부채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명세서

2. 재정상태보고서의 해설

〈재정상태보고서 예시〉

| | | |
|--|---|---|
| I . 유동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II . 투자자산 장기금융상품 III . 일반유형자산 건 물 감가상각누계액 IV . 주민편의시설 도 서 관 감가상각누계액 V . 사회기반시설 도 토 도시철도 VI . 기타비유동자산 보증금 자산총계 ① | I .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II .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III . 기타비유동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부 채 총 계 ② I . 고정순자산 II . 특정순자산 III . 일반순자산 순 자 산 총 계 ③ 부 채 와 순 자 산 총 계 |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상태보고서로 알 수 있는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1 사용가능한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bottom: 5px;"> <p>2 상환해야 할 부채는 얼마나 되는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p>3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얼마인가?</p> </div> |
|--|---|---|

-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기업회계에서의 “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성됨
- 지방정부의 각종 재산내역은 어떠한가 하는 자산(asset)정보와 빚은 얼마나 쌓여있는가 하는 부채(liability)정보, 그리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순자산정보 등으로 나뉘짐
- 시점 간의 스톡정보를 비교하게 되면 자산 변동, 부채 변동, 순자산 변동과 같은 재무상태의 변동상황을 알 수 있음
- 재정상태보고서는 토지·건물·현금 등 자금의 운용형태와 부채, 순자산 등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자산·부채 관리에 필요한 미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재정상태보고서(자산, 부채 등)의 작성기준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산 및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됨

1) 자산

가. 자산의 정의

- (1) 자산(assets)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일정기간 보유 또는 사용함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⁴⁾이나 공공서비스 잠재력⁵⁾(service potential)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재무회계에서 자산이란 현금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지칭함

나. 자산의 인식

- (1) 자산은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2)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함

다. 자산의 평가

- (1) 자산평가란 자산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자산은 취득원가(acquisition cost)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2) 취득원가란 자산의 구입대금 뿐만 아니라 동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포함. 예를 들어 차량운반구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 자체의 가액은 물론, 등록세,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됨

4) 직·간접적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예산회계에서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경우에 이를 지출로 처리하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컴퓨터의 사용으로 미래 현금수익을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 제공능력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처리

5) 미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도로·공원·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매각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미래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은 없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산임

라. 자산의 감가상각

- (1) 감가상각은 사용연수(耐用年數, 수명)가 유한한 모든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비용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으로 감가상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효익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원가배분과정

마. 자산의 종류

- (1) 자산과목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고, 유동성배열법⁶⁾에 따라 재정상태보고서에 표시됨
- (2)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산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감안해 지방회계기준은 이를 별도로 구분

가) 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의 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 등을 포함

나) 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말함
- 예컨대 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과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⁷⁾ 등을 포함

6) 1년(회계기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가 여부에 따라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장기투자증권과는 별도로 기타투자자산으로 표시, 다만 타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

- 회수가 불확실한 장기미수세금, 장기대여금 등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추산액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 결손처분충당금은 장기미수세금 등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다) 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은 1년 이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인 실체를 가진 자산을 말함
-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기타일반 유형자산 및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을 포함

라) 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말함
-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체육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기타주민편의시설,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을 포함

마) 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을 말함
- 주로 ① 양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동성에 제약이 있는 자산, ② 일반적인 유형자산에 비해 경제적 내용연수가 상당히 장기적인 자산, ③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하는 자산 등으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

바) 기타 비유동자산

- 기타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함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⁸⁾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⁹⁾하고 있는 자산을 말함. 일반적으로 특허권, 상표권 등 법률상의 권리 및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를 말함.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전산소프트웨어구입비, 전산프로그램개발비 등을 포함함.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2) 부채

가. 부채의 정의와 인식

- (1) 부채(liabilities)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함
 - (2)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3) 지방자치단체가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차입금과 지방채증권 뿐 아니라 예산회계에서 인식하지 않는 미지급채무(미지급금, 예수금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이 포함
- ※ 미지급채무나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은 현금의 유·출입을 가져오지 않는 부채로 발생주의 회계에서 나타나는 과목에 속함
- (4)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예산회계에서는 채무의 일종으로 보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구체적인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채로 보지

8)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은 권리가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해야 함

9) 통제가능성 : 무형자산은 해당자산의 소유 권리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않음. 다만, 채무부담행위의 원인이 되는 교환거래가 완료된 경우 부채로 계상

나. 부채의 평가

- (1)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이란 지방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 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 (2)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함
- (3)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상용인부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함.
- (4) 퇴직금지급규정, 퇴직금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기재함

다. 부채의 종류

- (1) 부채는 장래 변제해야 할 채무인데 1년 이내에 상환이 예정된 경우 유동부채, 1년 이상의 기간 후에 상환이 예정된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

가) 유동부채

-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임
- 미지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액을 말함. 회계에서는 주로 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계상하며, 지급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대금이 미불된 것은 미지급비용으

로 처리함

-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보관하였다가 해당 목적에 지급하는 모든 예수금액으로 함. 예를 들어 세입세출외 현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세수입, 시·군의 도세수입 등은 차변은 현금·예금자산으로, 대변은 예수금인 유동부채로 잡았다가 반환하면서 정리

※ 시·도에서 받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은 수익으로 처리

나)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지방채할인발행차금, 장기미지급금 등이 있음
- 장기차입부채가 만기가 가까워져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유동성장기차입부채라는 유동부채에 계상함

다) 기타비유동부채

-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하며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선수수익, 장기예수보증금 등이 있음
-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부채로 현금주의 관점에서는 부채가 아니지만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부채에 해당

※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 근로자, 운동부원 등이 퇴직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퇴직금 지급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예 : 퇴직연도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치, 연말정산금액 ÷ 12)

3) 순자산

가. 순자산의 정의 및 필요성

- (1) 정부회계에서 순자산(net asset)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서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
- (2)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는 양도와 처분이 제약되는 사회기반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자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순자산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
- (3) 순자산의 증가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이익,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 기타순자산의 증가 등이 해당되며, 순자산의 감소사항으로는 전기오류수정 손실,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 기타순자산의 감소 등이 해당됨

나. 순자산의 분류와 산정

- (1)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
- (2) 기금의 재정상태보고서에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이 계상된 경우 고정순자산을 먼저 계상하고,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특정순자산으로 계산하며, 일반순자산은 전체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잔여액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산정함

| |
|--|
| $\text{일반순자산} = \text{순자산 총계} - (\text{고정순자산} + \text{특정순자산})$ |
|--|

※ 재무보고서 작성사례

재 정 상 태 보 고 서

해당연도 : 20××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 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과목 | 해당연도(2010년) | | | | |
|----------------|-------------|------------|-------|------|--------------|
|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계 |
| 자 산 | | | | | |
| I. 유동자산 | 69,164 | 10,355 | 1,895 | 0 | 81,414 |
| II. 투자자산 | 4,047 | 6 | 0 | 0 | 4,053 |
| III. 일반유형자산 | 30,956 | 119 | 99 | 0 | 31,175 |
| IV. 주민편의시설 | 95,369 | 2,700 | 0 | 0 | 98,069 |
| | | | | | |
| 도서관 | 387 | 0 | 0 | 0 | 387 |
| 도서관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0 |
| 주차장 | 5,768 | 2,731 | 0 | 0 | 8,499 |
| 주차장감가상각누계액 | (44) | (47) | 0 | 0 | (91,519,732) |
| ... | | | | | |
| V. 사회기반시설 | 756,088 | 20 | 0 | 0 | 756,108 |
| VI. 기타비유동자산 | 38 | 4 | 0 | 0 | 394 |
| 자산총계 | 956,015 | 13,206 | 1,994 | 0 | 971,216 |
| 부 채 | | | | | |
| I. 유동부채 | 6,053 | 172 | 9 | 0 | 6,235 |
| 단기차입금 | 0 | 0 | 0 | 0 | 0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주15) | 850 | 0 | 0 | 0 | 850 |
| 기타유동부채(주14) | 5,203 | 172 | 9 | 0 | 5,385 |
| II. 장기차입부채 | 2,294 | 0 | 0 | 0 | 2,294 |
| 장기차입금(주15) | 2,294 | 0 | 0 | 0 | 2,294 |
| 지방채증권 | 0 | 0 | 0 | 0 | 0 |
| III. 기타비유동부채 | 13,784 | 2 | 0 | 0 | 13,787 |
| 퇴직급여충당부채(주16) | 13,632 | 2 | 0 | 0 | 13,635 |
| 기타비유동부채(주17) | 151 | 0 | 0 | 0 | 151 |
| 부채총계 | 22,132 | 174 | 9 | 0 | 22,316 |
| 순자산 | 0 | 0 | 0 | 0 | 0 |
| I. 고정순자산 | 880,423 | 2,844 | 99 | 0 | 883,367 |
| II. 특정순자산 | 0 | 0 | 1,885 | 0 | 1,885 |
| III. 일반순자산 | 53,459 | 10,187 | 0 | 0 | 63,646 |
| 순자산총계 | 933,882 | 13,031 | 1,985 | 0 | 948,900 |
| 부채외순자산총계 | 956,015 | 13,206 | 1,994 | 0 | 971,216 |

3. 재정운영보고서 해설

〈재정운영보고서 예시〉

| 재정운영보고서 | | | | | | |
|--|---|------|------|-----|--------|-----------|
| 과 목 | | 일반회계 | 기타회계 | 기회계 | 지방기업회계 | 6 내부거래 |
| 1 기능별 | 성질별 | | | 5 | | |
| I. 비용 입법및선거 일반행정 교육및문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사회복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II. 비용합계 (A) III. 수익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IV. 수익합계 (B) | I.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II. 정부간이전수익 III. 기타수익 IV. 수익총계 (A) V. 인건비 공무원급여 VI. 운영비 VII. 정부간이전비용 VIII. 기타이전비용 IX. 기타비용 X. 비용총계 (B) | | | | | |
| 운영차액 (=B-A) 4 | 운영차액 (=A-B) | | | | | |

재정운영보고서로 알 수 있는 것은?

- 1 기능별 재정운영 실적은 어떠한가?
- 2 당년도에 발생한 수익은 과목별로 얼마인가?
- 3 당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과목별로 얼마인가?
- 4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얼마인가?
- 5 회계·기금별 수익, 비용, 운영차액은 각각 얼마인가?
- 6 지방자치단체 내 내부거래는 얼마나 되며, 내부거래 (중복부분)을 제거한 운영차액은 얼마인가?

-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됨
- 재정운영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정보내용은 기업회계와 상당히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보고서의 성격, 개념, 구성체계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회계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에 투입된 원가(비용)와 재화의 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직접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같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음. 또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기업회계에서 말하는 순이익의 개념이 아니고 단순히 잉여금(또는 결손금)의 의미임

- 재정운영보고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로 표시하고,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함

1) 비용 * 2012회계연도 결산('13년)부터는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 사용
가. 비용의 정의와 인식

- (1) 비용¹⁰⁾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말함
- (2)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와 같은 거래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감소와 순자산감소로 처리한 후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그 내역을 표시함
- (3)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특징은 수익과 비용을 일반적으로 재화·서비스 제공과 그 대가를 개별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교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임. 따라서 정부회계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로 구분
- (4)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타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 (5)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나. 비용의 종류

- (1)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함. 단, 비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는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는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함

10) 비용(expense)은 보통 원가(cost)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임. 즉, 원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하여 희생된 또는 사용된 자원이나 서비스를 화폐가치로 표현한 금액이고, 비용은 당해 기간의 수익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가 중 당해 기간에 소멸된 부분을 의미함

- (2) 기능별 분류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으로 구분
- (3) 성질별 분류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 현행 예산회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재무회계에서 필요한 과목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 등

가) 인건비

-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기타 비정규직원, 상용인부 등 고용인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로 구성

나) 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 경비로 도서구입 및 인쇄비, 소모품비, 홍보 및 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 등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의료기관 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다) 정부간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조직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국가에 대한 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 보조금 등

라) 민간등이전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등에 금전 혹은 현물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운수업계보조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예비군운영 보조금, 국제기관부담금, 국외지원금, 전출금비용, 사립학교교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기타이전비용 등이 있음

마)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기타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일반유형자산 등 감가상각비, 미수세금 등 대손상각비,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등이 있음
- 상각비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산가치의 감소 또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합리적 추정에 따른 비용임. 예를 들어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상각 및 미수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상각비 등이 있음

2) 수익

가. 수익의 정의와 인식

- (1) 수익이란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의 증가
- (2) 정부회계에서 수익은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 이외에 과세권에 의한 조세, 정부 간 이전에 의한 보조금 등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이 포함됨. 다만,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관리전환 및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와 같은 거래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증가와 순자산 증가로 처리한 후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그 내역을 표시함
- (3)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수익창출 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직접적인 반

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해당 수익에 대한 법적·행정적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 (4)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수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① 수익 획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사실상 완료될 것, ② 교환이 발생할 것,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수익실현기준은 생산기준, 판매기준 및 회수기준이 있지만, 정부회계의 경우 생산기준이나 회수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별로 없으며 공유재산이나 물품매각의 경우 판매기준을 적용하게 됨
- (5) 지방세수익의 인식기준의 경우 지방회계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결의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데, 신고납부 방식의 경우 징수결의 이전의 수납시점에서는 수납금액을 부채(선수지방세)로 계상하고, 특별징수 방식의 경우 연부연납이나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일단 당해 세금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연부연납이나 분납으로 납기가 이연된 금액은 미수세금으로 계상
- (6) 세외수익의 경우 재화를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하여 인도하는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나. 수익의 종류

(1) 자체조달수익

가)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

나) 지방세수익은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바탕으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함

다) 경상세외수익은 정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포함함

라) 임시세외수익은 세외수익 중 비정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국·공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일반유형자산처분이익, 주민편의시설처분이익, 사회기반시설처분이익 및 기타임시세외수익 등을 포함함

(2) 정부 간 이전수익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으로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수익, 재정보전금수익, 국고보조금수익, 시도비보조금수익 등

(3) 기타수익

기타수익은 상기에서 별도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하며 예를 들어 회계간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외환차익 등을 말함

3) 운영차액*

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차액임

나. 정부운영은 단순한 이익의 극대화가 아닌 주민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추구하므로 단순히 수익과 비용의 차액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를 판단하기는 곤란

* 운영차액이 2012회계연도 결산시점(2013년)부터는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의 재정운영결과를 말함(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일반수익)

※ 재무보고서 작성사례

재 정 운 영 보 고 서(현행)

해당연도 : 20××년 12월 31일 현재

직전연도 : 2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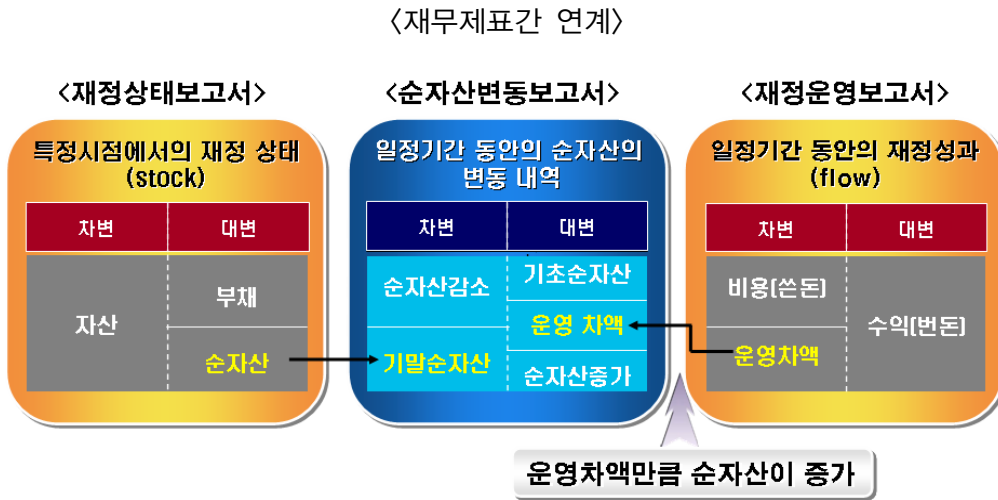
| 과목 | 직전연도(20XX년) | | | | |
|--------------------------|----------------|--------------|------------|----------------------|----------------|
| | 일반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계 |
| I. 비용 | | | | | |
| 일반공공행정 | 9,372 | 0 | 0 | 0 | 9,372 |
| 공공질서및안전 | 481 | 0 | 87 | (136,384,000) | 432 |
| 교육 | 911 | 0 | 0 | 0 | 911 |
| 문화및관광 | 3,414 | 0 | 0 | 0 | 3,414 |
| 환경보호 | 7,261 | 0 | 0 | 0 | 7,261 |
| 사회복지 | 116,794 | 351 | 18 | 0 | 117,164 |
| 보건 | 4,085 | 0 | 144 | 0 | 4,229 |
| 농림해양수산 | 4,013 | 0 | 0 | 0 | 4,013 |
| 산업·중소기업 | 5,633 | 0 | 0 | 0 | 5,633 |
| 수송및교통 | 3,794 | 1,116 | 0 | 0 | 4,910 |
| 국토및지역개발 | 1,313 | 3 | 0 | 0 | 1,317 |
| 과학기술 | 0 | 0 | 0 | 0 | 0 |
| 예비비 | 0 | 0 | 0 | 0 | 0 |
| 지원 및 기타 | 57,547 | 746 | 20 | 0 | 58,314 |
| II. 비용총계 | 214,624 | 2,218 | 270 | (136,384,000) | 216,976 |
| III. 자체조달수익 | 39,595 | 3,442 | 181 | 0 | 43,219 |
| 지방세수익 | 19,609 | 0 | 0 | 0 | 19,609 |
| 경상세외수익 | 11,853 | 1,037 | 70 | 0 | 12,961 |
| 임시세외수익 | 8,132 | 2,405 | 111 | 0 | 10,648 |
| IV. 정부간이전수익 | 197,620 | 334 | 52 | 0 | 198,008 |
| 회계간전입금수익 | 0 | 0 | 136 | (136,384,000) | 0 |
| 대손충당금환입 | 38,021 | 0 | 0 | 0 | 3 |
| 기타수익 | 1,915,160 | 0 | 0 | 0 | 1 |
| VI. 수익총계 | 237,218 | 3,777 | 370 | (136,384,000) | 241,229 |
| VII. 운영차액 (VI-II) | 22,594 | 1,559 | 100 | 0 | 24,253 |

| 재 정 운 영 보 고 서(원가개념 반영*) | | | | | | |
|---------------------------------------|-------------|------|-----|-------------|------|----------|
| 해당연도 : 20××년 12월 31일 현재 | | | | | | |
| 직전연도 : 20××년 12월 31일 현재 | | | | | | |
| 지방자치단체명 | | | | | | (단위 : 원) |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직전연도(20××년) | | |
|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I. 사업순원가 | | | | | | |
| 일반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II. 관리운영비 | | | | | | |
| 1. 인건비 급여 ... | | | | | | |
| 2. 경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 | | | | | | |
| III. 비배분비용 | | | | | | |
| 자산처분손실 기타비용 ... | | | | | | |
| IV. 비배분수익 | | | | | | |
| 자산처분이익 기타이익 ... | | | | | | |
|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 | | | | | |
| VI. 일반수익 | | | | | | |
| 1. 자체조달수익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 | | | | | | |
| 2. 정부간이전수익 지방교부세수익 보조금수익 ... | | | | | | |
| 3. 기타수익 전입금수익 기타 자원조달 ... | | | |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VI) | | | | | | |

※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로 '12.1.1 시행, 2012회계연도('13년 결산)부터 적용

4. 재무제표간 연계

- 1)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에서 기존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재무제표간 연계임
 - 2)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제표는 보고서간 상관관계를 통해 특정 분야의 변경이 발생하면 다른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한결 높아지게 되는 구조임
- ※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는 각 회계보고서간 연계장치가 없이 관리주체별로 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예산집행이 이뤄질 때 별도의 자료 입력의 과정을 거쳐야 관리가 가능



- 3) 자산에서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은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기말순자산과 같고, 재정운영보고서의 운영차액은 순자산변동보고서의 운영차액과 같은 등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간 연계를 통해서 보고서의 정합성이 유지됨

제5절 재무회계 정보의 활용

1. 재무회계 정보의 분석방법과 내용

□ 분석방법

- ▶ 재무제표 분석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크게 비율분석, 추세분석, 구성비 분석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1) 비율분석(ratio analysis)

- 비율분석은 각 계정별 대비에 의해 재무비율을 산출하는 것으로 간단하고 자료수집과 비율의 산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님. 이 비율분석에서 유의할 점으로서 지표의 해석시 2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인건비비율(%) = (인건비/총비용) × 100”으로 산정되는데, 여기서 직전연도에 비하여 당해연도에 인건비비율이 감소한 경우 그 원인은 2차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음
 - 즉, 인건비비율의 감소는 인건비 삭감에 의해서도 줄어들 수 있으나 총비용이 늘어난 경우 또는 양자 모두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임

(2) 추세분석, 경향분석, 시계열분석

- 경향분석은 2년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해 재무제표의 계정을 비교하는 것으로 기준년도와의 비교를 통해 재무비율의 변동(증감)을 용이하게 파악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
 -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은 재정상황분석의 핵심적 방법
- 연도별 비교분석
 - 증감분석 : 순자산증감률, 인건비증감률, 수익증감률, 비용증감률 등

(3) 구성비분석

- 구성비분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각 구성항목별 구성비(백분비)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성비분석에서 계정의 금액은 상대적 비율로 표시

◆ 분석방법 예시

| 분석방법 | 주요 재정지표 |
|--------------|---|
| 비율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비율, 부채비율(재정상태보고서) · 경상수지비율, 총수지비율(재정운영보고서) · 이자수입비율, 채무상환비율(혼합분석) |
| 추세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자산증감률, 수익증감률, 비용증감률 · 유형고정자산의 행정목적별 추이분석 |
| 다른 단체와의 비교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1인당 부채액, 주민1인당 지방세수액 · 공무원1인당 인건비 |
| 구성비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산에 대한 토지가액의 비중 · 총자산에 대한 도로가액의 비중 · 총자산에 대한 사회기반시설가액의 비중 · 총부채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비중 · 총자산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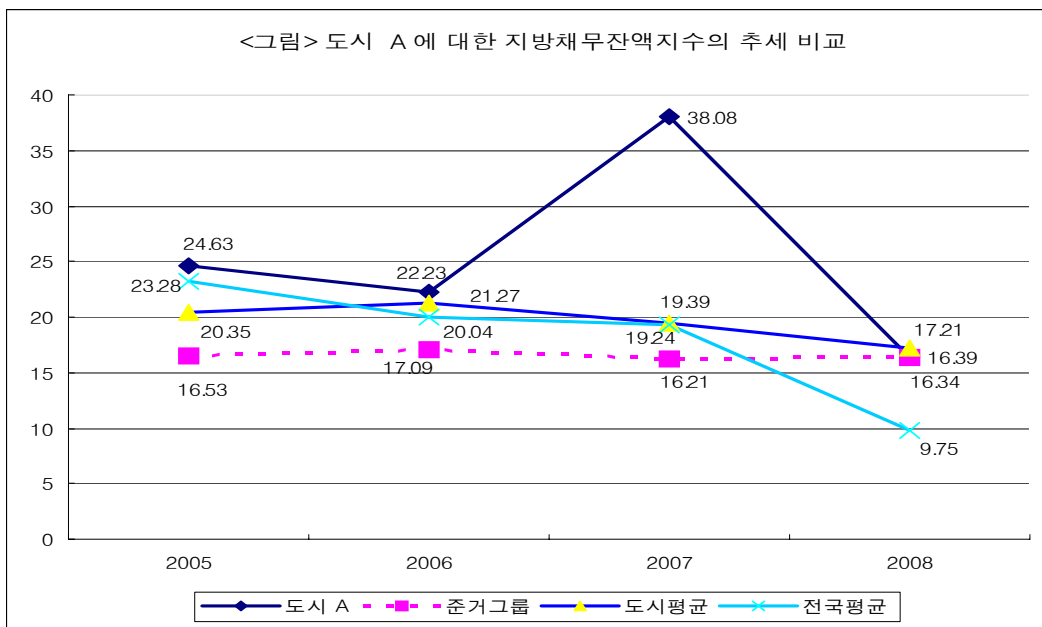
◆ 분석사례 : 지방채무잔액지수

| 자치단체 | 지방채무잔액지수 | | | | |
|--------------------------|----------|-------|---------|-------|-------|
| |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 A 시 | 1 | 24.63 | ✓ 22.23 | 38.08 | 16.39 |
| B 시 | 3 | 16.53 | 11.82 | 16.21 | 16.68 |
| C 시 | 4 | 46.63 | 21.16 | 27.61 | 48.98 |
| D 시 | 5 | 22.68 | 33.06 | 32.41 | 31.06 |
| E 시 | 8 | 0.91 | 0.75 | 0.57 | 0.43 |
| 준거그룹 평균(Mean) | | 22.68 | 18.64 | 16.93 | 14.63 |
| 준거그룹 중위수(Median) | | 16.53 | ✓ 17.09 | 16.21 | 16.34 |
|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 | 27.16 | 13.66 | 12.62 | 13.61 |

- 도시 A의 경우 아래 추세분석에 관한 표와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 평균과 전국 평균 대비에서 채무잔액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준거그룹과 비교하여 '05년~'07년에는 채무잔액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08년도에는 준거그룹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A도시는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대책을 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채무잔액지수의 추세분석 〉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
| A 도시 | 24.63 | 22.23 | 38.08 | 16.39 |
| 준거그룹(중위수) | 16.53 | 17.09 | 16.21 | 16.34 |
| 도시 평균 | 20.35 | 21.27 | 19.39 | 17.21 |
| 전국 평균 | 23.28 | 20.04 | 19.24 | 9.75 |



□ 분석내용

- 정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분석을 통해 정부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 수입과 지출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음
- 정부재무제표 분석은 납세자인 주민으로서는 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는지, 수익과 지출의 구성은 어떠한지, 채무상환능력이 있는지,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은 충분한지 등을 좀 더 확실한 근거에 의해 파악이 가능함
- 따라서 『정부의 가계부』라 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분석은 매우 중요하고 재무제표의 과거흐름과 현재를 비교 분석하여 자치단체가 건설한 정도와 공공서비스의 공급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알아야만 문제를 발견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2. 재무분석 지표

□ 재정상태 분야(9개)

| 지표명 | 산 식 | 의 미 |
|--------------------|--|---|
| ①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부채 / 총자산 × 100 | 자치단체의 총자산 및 총부채에 대한 총량을 나타냄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높음. 예: 지방채 및 철도공채의 발행으로 광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큼) |
| ② 총부채 대비 차입부채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부채 / 총부채 × 100 | 총부채 중 지방채 및 차입금 등 차입부채의 비중을 나타냄 (낮을수록 양호) |
| ③ 총부채 대비 실질부채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부채 - 기초단체 융자액) / 총부채 × 100 | 총부채중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융자액을 차감한후의 실질적인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비율을 산정 (낮을수록 양호) |
| ④ 재정자금 대비 금융상품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단기 금융상품 / 재정자금 × 100 | 재정자금 중 장단기금융상품의 비율을 나타냄 (높을수록 지자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 |
| ⑤ 총부채 대비 현금창출자산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창출자산 / 총부채 ※ 현금창출자산 : (유동자산 + 기타유동자산 - 일반미수금) + 장기금융상품 + (장기대여금 - 학자금위탁대여금) + 기타 투자자산 | 추가적인 현금유입이 없이, 신속하게 처분가능한 보유자산을 통한 부채상환능력 여부를 나타냄 (높을수록 양호) |
| ⑥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자금 / 차입부채 × 100 ※ 재정자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장·단기 금융상품 | 추가적인 현금유입 없이, 보유 중인 재정자금을 통하여 차입부채에 대한 상환능력 여부를 나타냄 (높을수록 양호) |
| ⑦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의 비율을 파악하므로써 단기적인 채무상환의 압박정도를 나타냄 (높을수록 양호) |
| ⑧ 미수세금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세금 대손충당금 / 미수세금(대손충당금 차감전) × 100 | 미수세금중 결손처분액 비율 (낮을수록 양호) |
| ⑨ 단기민간융자금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민간융자금 / 장·단기 민간융자금 × 100 | 민간융자금의 체납 가능성 정도를 나타냄 (낮을수록 양호) |

□ 재정운영 분야(9개)

| 지 표 명 | 산 식 | 의 미 |
|----------------------|--|---|
| ① 예산 대비 세출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출액(일반회계+특별회계) / 예산현액(일반회계+특별회계) × 100 | 예산현액 대비 세출액을 비교하여 이월이 빈번한 시설투자사업의 지출의 계획성 및 사업활동의 적시성 여부를 나타냄 (이월사업이 적어서 높을수록 양호함, 예: 시도는 시군구로의 이전에 따라 예산 및 세출의 불일치 가능성이 낮고, 시설투자사업이 적으므로 비율이 높음) |
| ② 경상비용 대비 이자비용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비용 / 경상비용 × 100 ※ 이자비용 : 차입부채 이자비용 ※ 경상비용 : 인건비+운영비+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경상적인 지출 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나타냄 (상대적인 부채규모가 클수록 큼, 낮을수록 양호) |
| ③ 이자수익 대비 이자비용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비용 / 이자수익 × 100 | 이자수익을 통해 이자비용의 변제가능 정도를 나타냄 (낮을수록 양호, 예: 차입부채대비 재정자금이 낮을수록 이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 |
| ④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수익 / 총수익 × 100 ※ 경상수익 : 지방세수익+경상세외수익+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총수익중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율을 나타냄 (높을수록 양호) |
| ⑤ 총수익 대비 경상자체조달수익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자체조달수익 / 총수익 ※ 경상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 경상세외수익 | 자치단체에 대한 수익구조의 자립성을 나타냄 (연도별로 증가할수록, 높을수록 양호) |
| ⑥ 자체조달수익 대비 채권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자체조달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 / 자체조달 수익 × 100 ※ 미수자체조달수익 : 미수세금+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 자체조달수익에 대한 채권의 회수노력 정도를 나타냄.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자치구는 세외수익 중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미수과태료수익 비중이 높으므로 해당 비율이 높음 (낮을수록 양호) |
| ⑦ 세외수익 대비 채권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수세외수익(대손충당금 차감후)/세외수익 × 100 ※ 미수세외수익 : 미수세외수입금+일반미수금 | 세외수익에 대한 채권의 회수노력 정도를 나타냄 (낮을수록 안정적) |
| ⑧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비용 / 총비용 × 100 | 총비용 중 경상비용 비율을 나타냄 (낮을수록 양호하며, 높을수록 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이전 여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 |
| ⑨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취득액 / 지출액 × 100 | 자치단체별 기반시설 등 자산취득 규모를 나타냄 |

□ 회계책임성 분야(11개)

| 지 표 명 | 산 식 | 의 미 |
|-----------------|-------------------------------|---|
| ① 주민 1인당 총자산 | ▪ 총자산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자치단체별로 주민1인당 총자산규모를 비교하여 나타내기 위함 (예: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군단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주민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② 주민 1인당 총부채 | ▪ 총부채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주민1인당 총부채를 비교분석함. 부채규모와 평균주민수에 따라 영향을 미침 (예: 특광역시의 부채규모가 크므로 도에 비해 큼, 시군구는 대부분 부채규모가 작으나, 평균주민수가 많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적음) |
| ③ 주민 1인당 실질부채 | ▪ 실질부채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자치단체별로 주민1인당 실질부채규모(총부채 중 시·군 용 자역차감)를 비교하여 나타내기 위함 (예: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유형별로 주민1인당 부채규모 비교가능) |
| ④ 주민 1인당 총수익 | ▪ 총수익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주민1인당 총수익액을 나타냄으로서 유사한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유형간 비교분석에 활용함 (시도에서는 지방세 징수세목이 많은 특광역시가 큼, 시군구는 수익규모가 적으나 이중 평균주민수가 많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작음) |
| ⑤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 ▪ 자체조달수익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자치단체별 또는 자치단체유형별로 수익구조의 지립도를 비교분석함 (높을수록 양호한 수익구조) |
| ⑥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 | ▪ 지방세수익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주민1인당 지방세수익을 나타냄으로서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유형간 비교분석에 활용 (높을수록 양호한 수익구조) |
| ⑦ 주민 1인당 총비용 | ▪ 총비용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주민1인당 부담하는 총비용규모를 나타냄.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유형간 비교분석가능하며 낮을수록 양호 (수익규모가 비용규모의 제약조건이 되므로 주민1인당 총수익과 유사) |
| ⑧ 주민 1인당 기타이전비용 | ▪ 기타이전비용 / 인구수 (회계연도말 인구수) | 주민1인당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위한 민간이전비용 규모를 비교가능함 (군이 높음, 인구가 적고, 각종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이 많으므로) |
| ⑨ 공무원 1인당 총수익 | ▪ 총수익 / 공무원(현원) |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 기초)별 공무원 1인당 총수익을 비교하여 나타냄. (시도 중 세입규모 차이로 특광역시가 높음, 시군구에서는 수익규모는 적으나 공무원수가 많은 자치구가 최소화) |
| ⑩ 공무원 1인당 총비용 | ▪ 총비용 / 공무원(현원) | 자치단체 유형별(특광역, 기초)별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을 비교하여 나타냄 (시도 중 정부간이전비용이 많은 도가 큼, 시군구에서는 비용규모가 적고 공무원수가 많은 자치구가 더 작음) |
| ⑪ 공무원 1인당 급여 | ▪ 총급여 / 공무원(현원) | 자치단체별 공무원 1인당 급여를 나타냄 (시도가 시군구에 비해 소방서 등 관서가 포함되고 고위공직자 및 직제가 많으므로 더 높음) |

3. 재무회계 정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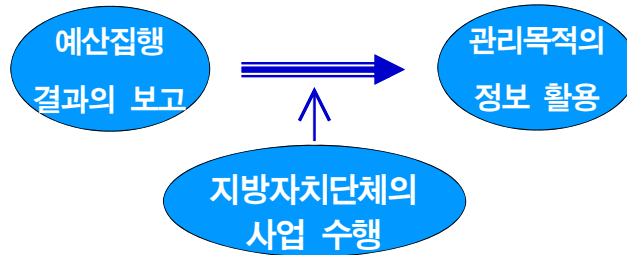
□ 재무회계 정보 활용의 주요내용

| 재무회계 정보 활용 | 주된 정보이용자 | 제약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적인 재정상태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 및 변동정보 - 정확한 재정상태 및 재정의 문제점 진단 •재정운영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비용의 현황 및 변동정보 - 주요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에 관한 정보 | 지역 주민, 의회 등 | 제도이해 부족 주민친화 미흡 주민홍보 미흡 결산제도 미정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 효율화(유휴자산의 처분이나 활용, 불량자산에 대한 대응책 강구) - 재정지출경비의 팽창억제 - 지방채 증대에 대한 삭감방안 •사업에 대한 원가분석 및 성과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재정지출사업의 성과에 관한 정보 - 사업원가 : 총비용, 단위비용 정보 •재정분석, 재정관리 지원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사업의 자원소요액에 관한 정보 - 재정정책 및 예산수립에 분석결과 반영 - 정책 및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내부관리자 등 | 원가산정 등 관리회계 인프라 취약 사업예산/성과관 리와의 연계결여 성과분석제도의 미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관리층의 전략적, 거시적 정책의사 결정 지원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의 우선순위 판단 -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 재정·경제예측 및 재정사업의 위험성·불확실성에 관한 정보 | 최고관리층 | 정책평가 기능 미흡 비재무적 정보와 의 종합분석 부족 미래예측기법미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채 발행 요건(Bond Rating) •주민에 대한 대외 홍보자료 등 | 외부 및 내부 이용자 | 지방채 발행허가 주민관심사항 |

□ 성과관리 측면

■ 오늘날 기업경영전략으로서 『균형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 Card)』는 재무제표가 기업을 관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재무적 관점 외에 고객, 내부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는 세 가지 비재무적 관점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조직의 전략을 입체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방법임

- 과거의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정부재정에서 회계제도는 예산에서 결산까지의 기록 계산 보고를 담당 : 재정상황, 운영현황, 집행결과의 보고
 - 예산 대비 집행상황 보고, 수지결산 보고
- 오늘날 발생주의회계는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음(원가정보, 성과측정 강조)



- 국가(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보면, 재정사업을 계획, 집행, 성과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적절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질문에 따른 답변을 작성하는 형식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 계획단계에서는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
 - 집행단계에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 자원집행의 적절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노력 등을 점검
 - 성과단계에서는 객관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했는지 여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 등을 점검
-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현재 재무회계정보는 예산사업의 성과목표나 재정성과관리와의 연계성이 없다는 점임

- 사업의 효율성지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진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동일 비용으로 보다 성과를 높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참고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공통질문 〉

| 구 분 | 〈 10개 공통질문 〉 | 배점 | |
|-------------------|------------------|--|-------|
| 계획 (20) | 사업 계획 (10) | 1-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3,33 |
| | | 1-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유형별·부문별 특성지표 | 3,33 |
| | 성과 계획 (10) | 2-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5 |
| | | 2-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 5 |
| 관리 (30) | | 3-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12~15 |
| | | 3-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 8~10 |
| | | 3-3.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유형별·부문별 특성지표 | 5 |
| | | | 5 |
| 성과/ 환류 (50) | | 4-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30 |
| | | 4-2. 사업평가 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10 |
| | | 4-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10 |

출처 : 기획재정부, 2011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매뉴얼, 2010.12.

- 재무회계정보가 자치단체의 정책수립과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부회계를 둘러싼 전반적인 기반구축과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1) 회계교육을 확대하고 정부회계 자격증 등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친화적인 정보 제공(도표, graph 등)으로 알기 쉽고 수요자의 관심을 유도
- (2) 자치단체의 재정위상(financial position)과 재정상황(financial condition)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현금주의정보 만으로는 한계 존재, 따라서 재무회계정보의 활용도와 정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금주의 정보와 발생기준 정보의 기능적 보완 및 연계 운영이 필요
- 결산체계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통합재정분석의 틀을 설계

- (3) 재무정보는 성과관리와 연결될 때 환류기능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 성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사업단위 투입 원가정보 생성 필요

※ 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행 : '12년 전면시범, '13년 전면시행

제6절 주요 외국의 재무회계(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사례

주요 선진국의 재무회계(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의 재무보고서 및 재무보고체계 등을 비교해 보면 한국 정부회계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음

〈주요 외국의 재무보고서 비교〉

| 구 분 | 미국 | 영국 | 뉴질랜드 |
|---------|---|--|---|
| 재 무 보고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재무제표 - 통합재무제표 - 활동보고서 - 현금흐름보고서 - 펀드유형별 재무제표 · 필수보충정보 - 예산비교명세서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산출요약서 · 운영원가계산서 · 대차대조표 · 현금흐름계산서 · 부처의 목적·목표별 자원명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성과표 · 재정상태표 · 현금흐름표 |

〈주요 외국의 재무보고체계 및 주요 특징〉

| 구 분 | 재무보고 체계 | 주요 특징 |
|-----|---|--|
| 미국 | 통합재무제표는 발생기준으로 통일 하고, 펀드유형별 결산보고를 병행 처리하는 방식 | 예산편성은 수정발생주의, 결산보고는 재무제표에 예산실적을 추가하는 방식 |
| 영국 | 자원회계 및 예산제도(RAB)를 통해 발생주의 기준을 모두 적용하며 단일 체제 실시 | 발생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기획, 예산편성, 결산보고를 총괄적으로 연계하여 재정관리의 성과개선 및 예산효율성을 제고 |
| 일본 |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병행처리, 예산결산을 중심으로 하고 재무제표는 보충적 정보로 활용 |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재무회계제도의 개선 적극 추진 |

제3장

거래와 회계처리

제3장 거래와 회계처리

제1절 수입거래의 회계처리

1. 수입거래의 개념과 수익의 분류

1) 지방세 수익의 회계처리

가. 수익의 인식시기와 회계처리

- (1) 지방세수익의 경우 징수방식에 관계없이 징수결의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지방세의 경우 부과지를 하는 경우와 자진신고의 경우가 있으며,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징수결의시점이라고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
- (2) 자진신고하는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의시점 이전에 수납이 발생하며, 수납시점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수납액을 부채(선수수익)로 회계처리

나. 부과지하는 지방세의 회계처리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 |
|----------------------|-------------------|--------------------|
| | 차 변 | 대 변 |
| i) 징수결의 시점 | 미수○○세(자산) 500 | ○○세수익(수익) 500 |
| ii) 부과취소·감액 시점 | ○○세수익(수익) 100 | 미수○○세(자산) 100 |
| iii) 정상수납 시점 | 현금과예금 300 | 미수○○세(자산) 300 |
| iv) 과오납환부시점 | 미수○○세(자산) 200 | 현금과예금 200 |
| v) 대손처분 시점 | 미수○○세 대손총당금 50 | 미수○○세(자산) 50 |
| vi) 총당금 설정 : 기말결산 | 미수세금 대손상각비 100 | 미수○○세 대손총당금 100 |

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회계처리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 |
|-----------------|---------------|---------------|
| | 차 변 | 대 변 |
| i) 신고납부 시점 | 현금과예금 500 | 선수○○세(부채) 500 |
| ii) 징수결의 시점 | 선수○○세(부채) 100 | ○○세수익(수익) 100 |
| iii) 부과취소·감액 시점 | ○○세수익(수익) 300 | 선수○○세(부채) 300 |
| iv) 과오납환부시점 | 선수○○세(부채) 200 | 현금과예금 200 |

2) 경상세외수익의 회계처리

가. 경상세외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하며, 재산임대료수익, 사
용료수익 등을 포함

나. 경상세외수익의 인식은 판매시점이나 서비스제공이 완료된 시점임

다. 징수교부금수익은 시·군·자치구가 시·도의 지방세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을 대신하여 징수한 금액 중 위임징수에 대한 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이나 대가없이 수취한 이전수익이 아니므로 자체조달수
익 중 경상세외 수익 과목으로 표시함

라. 경상세외수익의 회계처리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음

| 거래단계 | 회 계 처 리(분개) | |
|---------------------------|------------------|----------------|
| | 차 변 | 대 변 |
| i) 부과지시(징수결의) | 미수사용료(자산) 500 | 사용료수익(수익) 500 |
| ii) 감액 결의 ¹⁾) | 사용료수익(수익) 100 | 미수사용료(자산) 100 |
| iii) 수납시 | 현금과예금 400 | 미수사용료(자산) 400 |
| iv) 체납시(가산금 징수결의) | 미수사용료(자산) 300 | 사용료수익(수익) 300 |
| v) 과오납환부 | 미수사용료(자산) 50 | 현금과예금 50 |
| vi) 결손처분시 | 미수사용료대손충당금 150 | 미수사용료(자산) 150 |
| vii) 충당금설정(기말 결산정리) | 미수세외수입금대손상각비 200 | 미수사용료대손충당금 200 |

3) 임시세외수익의 회계처리

가. 회계처리 개요

(1) 임시세외수익은 일반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 등 매각시 발생하는 자산 처분이익과 과태료 및 과징금수익 등과 같이 자산처분과 관계없이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을 말함

(2)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또는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물품을 장부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며, 장기보유 목적의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 등을 장부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투자자산 처분이익으로 처리

※ 공유재산 등 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차액은 해당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며, 투자자산의 경우는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처리

(3) 자산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손실의 인식시점은 자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이며, 따라서 자산의 처분 완료 전에 발생한 세입은 부채(선수금)로 회계처리

(4) 자산처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시세외수익은 지방세수익과 마찬가지로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을 인식

(5)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인식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 현행 제도상 임시적 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수입 등 단순한 회계적 수입항목은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임시세외수익에서 제외되며,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등 이전적 수입항목은 임시세외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분류됨

나. 자산매각수익의 회계처리

(1) 자산매각수익은 지자체 소유 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자산매각수익과 국

11) 착오부과 등에 의해 환부하는 경우임

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매각을 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으로 구분됨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매각 대행수수료 수익은 경상세외수익의 징수교부금수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경상세외수익과 같이 징수결정 시점에 수익을 인식
- (3)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자산매각거래라는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교환거래가 완료되는 시점, 즉 자산의 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

< 국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의 회계처리의 예 >

① 징수결의

| | | | |
|-----------------------|-----|---------------------|-----|
| (차)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400 | (대)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400 |
|-----------------------|-----|---------------------|-----|

② 수납시

| | | | |
|-----------|-----|-----------------------|-----|
| (차) 현금과예금 | 400 | (대) 미수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 400 |
|-----------|-----|-----------------------|-----|

< 지방자치단체 자신이 소유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회계처리의 예 >

① 징수결의

| | | | |
|--------------------|-----|-------------|-----|
| (차)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자산) | 600 | (대) 선수금(부채) | 600 |
|--------------------|-----|-------------|-----|

② 수납시

| | | | |
|-----------|-----|--------------------|-----|
| (차) 현금과예금 | 600 | (대)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자산) | 600 |
|-----------|-----|--------------------|-----|

③ 자산처분일

- 자산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인식

| | | | |
|---------------|----|-----------------|----|
| (차) ○○자산감가상각비 | 50 | (대) ○○자산감가상각누계액 | 50 |
|---------------|----|-----------------|----|

- 처분손익 인식

| | | | |
|-------------|-----|----------|-----|
| (차) 선수금 | 600 | (대) ○○자산 | 700 |
| ○○자산감가상각누계액 | 200 | ○○자산처분이익 | 100 |
| (○○자산처분손실) | | | |

다. 기타 임시적 세외수익의 회계처리

- (1) 민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수익, 일반부담금수익, 과태료 및 범칙금수익,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처분이익, 기타 비유동자산처분이익 그리고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체납처분수익, 보상금수익 등
- (2) 기타 임시적 세외수익의 회계처리는 경상적 세외수익의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

4)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 및 지방채발행 수입의 회계처리

가. 정부간이전수익

- (1) 정부간이전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상위 정부의 교부에 의해 조달한 수익을 말함
- (2) 정부로부터 수취하는 보조금의 경우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현행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이러한 구분을 채택하지 않음

〈 정부간이전수익의 회계처리 :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 등 〉

| 거 래 단 계 | 회 계 처 리(분개) | |
|-------------------------|-------------|-------------|
| | 차 변 | 대 변 |
| • 징수결의 및 수납 동시 | 현금과예금 500 | 국고보조금수익 500 |
| • 보조금 반납확정시 (결산정리분개) | 국고보조금수익 100 | 일반미지급금 100 |

* 시·도에서 보관하는 시·군·구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세입세출외보관현금으로 처리

나. 기타수익

- (1) 기타수익은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환차익 및 발생주의회계로 인한 평가이익 등을 포함

- (2) 전입금수익은 지방자치단체내의 각 회계 및 기금간의 자금이전에 대한 것이므로 정부간이전수익이 아닌 기타수익으로 표시함에 유의
- (3)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정운영보고서에 수익과목인 기부금과목으로 처리하지만, 기부채납 방식에 의해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순자산변동보고서의 기부채납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로 처리함
- (4) 기타수익은 전입금과 기부금 이외에는 대부분 발생주의 개념의 적용에 따라 새롭게 수익과목에 포함되는 항목임. 대체로 현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평가이익임
- (5) 주로 결산시점에서 존재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통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목임

〈 기타수익의 회계처리 : 전입금수익 등 〉

| 거 래 단 계 | 회 계 처 리(분개) | |
|----------------|--------------|--------------|
| | 차 변 | 대 변 |
| • 징수결의 및 수납 동시 | 현금과예금 300 | 회계간전입금수익 300 |
| • 반납시 | 회계간전입금수익 300 | 현금과예금 300 |

제2절 지출거래의 회계처리

1. 지출거래의 개념과 비용의 분류

1) 개념

가. 지출거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나 물건비 등의 현금을 지출하는 거래를 말함

- 나. 지출거래는 대부분 재무회계과목 중 비용의 발생, 자산의 취득 및 부채의 감소(지방채 상환)로 기록됨
- 다. 지출거래의 인식은 검수·검사와 지급 명령시 지출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장부에 기록하게 됨

2) 비용의 분류

가. 성질별 분류

| 종분류 | 계 정 과 목 |
|-------------|--|
|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인건비, 퇴직급여 |
| 운영비 | 도서구입및인쇄비, 소모품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기타자산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및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운영비, 주민자치활동운영비, 징수교부금, 연료비, 원·정수구입비, 용지·주택매출원가, 기타운영비 |
| 정부간 이전비용 |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자단체간부담금, 국가에대한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
| 민간등 이전비용 |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이차보전금, 출연금, 전출금비용, 지방공공기관보조금, 기타이전비용 |
| 기타비용 | 자산처분손실, 자산감액손실,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손,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기타비용 |

나. 기능별 분류

현재 지방회계기준은 예산과목 중 ‘분야’에 해당하는 예산구분을 이용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등

3) 예산과목상의 비용구분

| 구분 | 편성목 | 성격 | 비고 |
|----------------------|--|---|--|
| 100 인건비 | 인건비(101) | 비용 | 퇴직금 지급 : 부채 |
| 200 물건비 | 일반운영비(201), 여비(202), 업무추진비(203) 직무수행경비(204), 의회비(205), 재료비(206) | 비용 | 소송공탁금,보증금 및 전세금, 리스료 재고품 구입 : 자산 |
| | 연구개발비(207) | 비용 | 전산개발비 : 자산 |
| 300 경상이전 | 일반보상금(301) 이주및재해보상금(302) 포상금(303), 연금및부담금등(304), 배상금 등(305) 출연금(306), 민간이전(307), 자치단체등이전(308)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국외이전(310), 차입금이자상환(311) | 비용 비용 비용 비용 비용 | 이주보상금 : 자산 학자금위탁대여금 : 자산 |
| | 400 자본지출 | 시설비및부대비(401) 민간자본이전(402), 자치단체등 자본이전(403) 공기업자본전출금(404), 자산취득비(405)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 자산 비용 자산 비용 |
| 500 융자 및 출자 | 융자금(501), 출자금(502) | 자산 | |
| 600 보전재원 | 차입금원금상환(601) 여치금(602) | 부채 자산 | |
| 700 내부거래 |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기타내부거래(706) | 비용 비용 자산 부채 비용 | 예수금이자상환 : 비용 적립금 : 자산 |
| 800 예비비 기타 | 예비비(801), 반환금기타(802) | 비용 | 과오납금 : 부채 |

2. 일반지출중 비용의 회계처리

1) 인건비의 지급

- 가. 인건비는 지자체 공무원 및 기타 고용인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것으로 공무원급여, 복리후생비, 기타급여, 퇴직급여,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공무원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장학금·재해보상금·일반지원금 등을 포함
- 나. 공무원급여의 지급과정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주민세 및 건강보험에 대한 본인부담분 등은 일정기간 후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에 납부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단기 예수 보관금으로 회계 처리함
- 다. 퇴직급여는 기타인건비를 제공받는 자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인 자(예컨대, 기간제근로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님)에 대한 퇴직금지급 추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과목임
- 라. 인건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제공의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은 전부 인건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인건비의 회계처리 〉

① (일반직) 급여 지출결의시

| | | | |
|--------|-----|-------------|-----|
| (차) 급여 | 300 | (대) 일반미지급비용 | 300 |
|--------|-----|-------------|-----|

- 지급 명령시(지출시)

| | | | |
|-------------|-----|-----------|-----|
| (차) 일반미지급비용 | 300 | (대) 현금과예금 | 300 |
|-------------|-----|-----------|-----|

② (기간제근로자) 급여 (검수시)

| | | | |
|----------------|-----|-------------|-----|
| (차) 기간제근로자등인건비 | 200 | (대) 일반미지급비용 | 200 |
|----------------|-----|-------------|-----|

- 지급 명령 시(지출시)

| | | | |
|-------------|-----|-----------|-----|
| (차) 일반미지급비용 | 200 | (대) 현금과예금 | 200 |
|-------------|-----|-----------|-----|

2) 운영비의 지급

가. 운영비는 정부활동 수행에 있어서 관서운영비, 간행물구입비 등과 같이 자산화와 관계가 없는 조직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다음과 같은 지출을 말함

- ①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 ② 기본 업무수행,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소요되는 각종 여비
- ③ 기관운영, 시책추진, 부서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 ④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
- ⑤ 수선유지비, 이자비용, 행사비 등

나. 관리책임자산인 유산자산, 천연자원 등의 2010년부터 신규 취득에 관련된 지출은 기타유산자산으로 처리

다. 시설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는 실물자산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 일반 유형자산 수선유지비,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및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로 세분화 표시

라.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직무수행경비는 성격상 공무원급여에 포함하며, 공로연수 및 산업시찰경비, 공무원재해보상금, 기타공무원포상 및 상여금 등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한 것이므로 복리후생비에 포함

< 운영비의 회계처리 >

① 검수시

| | | | |
|------------|-----|-------------|-----|
| (차) 공무원의료비 | 500 | (대) 일반미지급비용 | 500 |
|------------|-----|-------------|-----|

② 지급명령시

| | | | |
|-------------|-----|-----------|-----|
| (차) 일반미지급비용 | 500 | (대) 현금과예금 | 500 |
|-------------|-----|-----------|-----|

3)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 등 이전비용의 회계처리

- 가.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이전비용을 그 대상에 따라 지자체 상호간 및 지자체와 정부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이전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이전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함
- 나. 정부간이전비용은 지자체보조금이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처럼 정부부서간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회계처리하는 과목임
- 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경상전출금 및 지방공사·공단 등에 대한 전출금은 정부간이전비용이 아닌 민간등이전비용에 포함됨.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에 자본으로 계상되면, 민간 등 이전비용이 아니라 투자자산¹²⁾으로 처리하여야 함
- 라. 타 정부기관을 제외한 지자체 내의 회계간 이전비용, 지방공사·공단에 대한 이전비용, 민간·사회단체·국제기구에 대한 부담금 및 지원금 등은 모두 민간등이전비용에 일괄하여 표시함
- 마. 민간등이전비용으로 처리된 후 해당 지자체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일정주기(분기, 반기, 연말)로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자산등록 등의 절차수행 가능함

〈 이전비용의 회계처리 〉

① 정부간이전비용

<검수시>

| | | | |
|-------------|-----|-------------|-----|
| (차) 시·도비보조금 | 600 | (대) 일반미지급비용 | 600 |
|-------------|-----|-------------|-----|

<지급명령시>

| | | | |
|-------------|-----|-----------|-----|
| (차) 일반미지급비용 | 600 | (대) 현금과예금 | 600 |
|-------------|-----|-----------|-----|

12)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 경우 기타투자자산의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공사·공단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경우 장기투자증권으로 처리

② 민간 등 이전비용

<검수시>

| | | | |
|-------------|-----|-------------|-----|
| (차) 민간의료보조금 | 700 | (대) 일반미지급비용 | 700 |
|-------------|-----|-------------|-----|

<지급명령시>

| | | | |
|-------------|-----|-----------|-----|
| (차) 일반미지급비용 | 700 | (대) 현금과예금 | 700 |
|-------------|-----|-----------|-----|

4) 일상경비지출의 회계처리

일상경비로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출한 자금은 일반자금과 구분하여 일상경비전도금 과목으로 기록한 후, 일상경비의 목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회계연도 말 정산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금이 남은 경우 일상경비전도금을 자금과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함

< 일상경비의 회계처리 >

① 일상경비교부시

<검수시> : 회계처리 없음

<지급명령시(교부시)>

| | | | |
|-------------|-----|-----------|-----|
| (차) 일상경비전도금 | 500 | (대) 현금과예금 | 500 |
|-------------|-----|-----------|-----|

② 일상경비에서의 지출(예: 소모품 구입)

<검수 및 지급명령시>

| | | | |
|----------|-----|-------------|-----|
| (차) 소모품비 | 300 | (대) 일상경비전도금 | 300 |
|----------|-----|-------------|-----|

<정산후 잔액 반납시>

| | | | |
|-----------|-----|-------------|-----|
| (차) 현금과예금 | 200 | (대) 일상경비전도금 | 200 |
|-----------|-----|-------------|-----|

3. 자산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1) 자산취득 지출의 회계처리

가. 집기비품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자산대장에 등록하고 자산으로 기록하게 됨

나. 자산취득을 위하여 선급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는 선급금으로 기록한 후 (유형자산 취득 시에는 건설중인 자산)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선급금을 해당 자산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자산취득의 회계처리 >

①-1 검수시

| | | | |
|----------|-----|------------|-----|
| (차) 집기비품 | 500 | (대) 일반미지급금 | 500 |
|----------|-----|------------|-----|

①-2 지급명령시

| | | | |
|------------|-----|-----------|-----|
| (차) 일반미지급금 | 500 | (대) 현금과예금 | 500 |
|------------|-----|-----------|-----|

②-1 선급금 지급시

| | | | |
|---------|-----|-----------|-----|
| (차) 선급금 | 400 | (대) 현금과예금 | 400 |
|---------|-----|-----------|-----|

②-2 선급금을 자산계정 대체시

| | | | |
|----------|-----|---------|-----|
| (차) 재고자산 | 700 | (대) 선급금 | 400 |
| | | 현금과예금 | 300 |

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 회계별로 취득비를 지출시 각 회계의 자산 또는 주된 회계의 자산으로 처리함

2) 고정자산 유지관리비용의 회계처리

가. 고정자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은 운영비 내의 자산수선유지비 등의 비용항목으로 처리함

나. 예를 들어, 청사건물 옥상방수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함

① 검수시

(차) 건물수선유지비 800 (대) 일반미지급비용 800

② 지급명령시

(차) 일반미지급비용 800 (대) 현금과예금 800

3) 건설중인 공사 지출에 따른 회계처리

가. 자산과 관련된 유지보수 지출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유형(예: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으로 처리함

나. 자산 형성적 거래의 경우는 반드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자산등록해야 함

다. 재고자산의 형성을 위한 건설공사는 회기중에는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으로 관리하다가 결산시점에 재고자산으로 계정을 재분류하여 처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 회계처리 예시 : 청사신축공사 〉

| 거 래 단 계 | 회 계 처 리(분개) | |
|-----------------------|----------------|------------------|
| | 차 변 | 대 변 |
| ·선금 검수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500 | 일반미지급금 500 |
| ·선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500 | 현금과예금 500 |
| ·관급자재 납품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400 | 일반미지급금 400 |
| ·관급자재 대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400 | 현금과예금 400 |
| ·기성금 검수시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300 | 일반미지급금 300 |
| ·기성금 지급시 | 일반미지급금 300 | 현금과예금 300 |
| ·공사준공시 ¹³⁾ | 건물 1,200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200 |

13)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가 진행중일지라도 결산시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함

(차) 판매용부동산 xxx (대)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xxx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회계처리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교부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시·군·구에서는 교부받은 시점에 수익(시·도비보조금수익)으로 처리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구에서 보조금으로 시·도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결산시 시·도자산에 대하여 시·군·구에서는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로, 시·도에서는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로 각각 처리함

※ 시·군·구에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도의 자산을 자산등록한 후 시·도로 관리전환 함

제3절 자산의 분류와 건설중인 자산 등의 회계처리

1. 자산의 분류

- 1) 지출거래 중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회계 처리함
- 2) 지방회계기준은 유동성 기준에 의하되 정부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산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등으로 자산과목을 열거하여 정부회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특수한 자산이 갖는 정보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함
- 3) 예산회계는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구분하는 분류기준을 사용하지만 발생주의회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4)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며,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

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5) 공유재산과 발생주의회계에 의한 자산을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투자자산과 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물품은 일반유형자산, 그리고 채권은 유동자산과 각각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2. 건설중인 자산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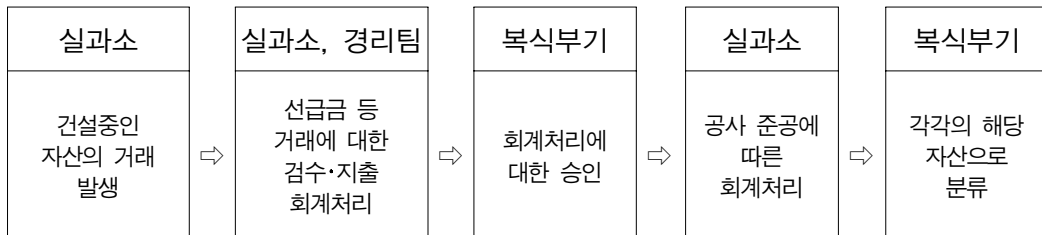
1) 건설중인 자산의 정의

- 가.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임시적으로 회계처리 결과를 집계·관리하는 회계 과목임
- 나. 건축물, 시설물 외에 토지 등의 취득, 구입 및 설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기계장치의 경우도 포함

2) 거래의 인식 및 회계처리시점

- 가. 예산거래 중 지출거래 유형의 하나로써 지출행위 즉, 예산의 집행과정 중 회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검수·검사시점, 지급명령(지출)시점 및 공사완공 후 건설중인 자산 준공시점에 각각 회계 처리함

나. 처리절차



- 다. 최초 건설중인 공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는 복식부기 업무담당자가 사전에 취합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운영 가능
- 라. 거래(검수 및 지급명령서) 발생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건설중인 자산 선택·등록

3) 재무제표상 표시

향후 형성될 자산의 종류에 따라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로 구분함

4) 항목별 건설비용의 회계처리

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 (1) 건축물의 공사비와 설계에서 준공 후 등기, 등록까지 과정에 소요되는 취득부대비용은 모두 해당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
- (2) 설계용역비, 조달수수료, 설계심사회의수당,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공사 감독비, 관급자재구입비, 시설물공사비, 인입선공사비, 감리용역비, 소유권이전비용(이전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나.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 (1) 토지의 구입비와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 (2) 토지구입비, 토지정지비, 지장물보상비, 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이주보상비, 영업손실보상비, 실농보상비, 신문광고료, 각종 수수료(지적측량비, 감정평가비, 문화재지표조사비, 소유권이전비용 등) 및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다.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1)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 회의 관련 비용 등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

라. 건물 철거 관련 비용(철거공사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의 회계처리

- (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함
- (2)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5) 취득부대비용 산정의 특례

- 가. 다수의 공사(또는 주된 자산)에 공통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의 구분이 실무상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비(또는 구입가액)가 큰 주된 공사(또는 주된 자산)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음
- 나. 토지취득에 있어 일괄구입 등에 따라 부대비용의 필지별 안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된 토지의 부대비용으로 일괄 포함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주된 토지라 함은 ① 구입가액이 가장 큰 필지, ② 지번 중 가장 상위 지번 혹은 대표 지번이 포함된 필지, ③ 면적이 가장 넓은 필지 등을 의미함. 다만, 필지별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원가에는 취득 부대비용을 포함함
- 다. 해당 공사(사업)와 직접 연관성을 지니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건설자금 이자)는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이자비용으로 처리함

3.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1) 개념

- 가. 1300 일반유형자산, 1400 주민편의시설, 1500 사회기반시설 등을 취득한 이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선, 보수 등에 관련된 지출을 자산 또는 비용으로 인식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임
- 나. 당해 자산의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현저한 가치 증가 또는 성능 개선 등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가액에 포함
- 다. 부분품 교체 등 자본적 지출 이외의 지출은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력 유지를 위한 경상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리함

2) 구분 및 적용방법

- 가. 우선적으로 ① 자본적 지출 및 경상적 지출의 기본 개념에 의해 판단 후 구분이 어려울 때는 ② 지출유형별 사례를 통하여 판단함
- 나. 대수선 등 대규모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자본적 지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수선공사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자본적 지출 또는 경상적 지출로 회계처리 가능

| 자본적 지출 | 경상적 지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 •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같은 개축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신규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개량, 확장, 증설, 증축, 개축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나 지붕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도장, 유리교체 • 기계장치 또는 차량운반구 등의 소모품 대체 • 위와 유사한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것 •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

4.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과 상각대상자산

가. 감가상각은 시간경과에 따른 자산의 물리적, 기능적 퇴화 및 가치감소를 회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함

나. 토지, 입목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으며, 사용가능한 상태의 자산이 아닌 건설중인 자산도 감가상각하지 않음

다.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다음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수선유지비로 대체할 수 있음(대체법)

- ① 도로(토지, 입목 뿐만 아니라 건물, 구축물 등 포함)
- ② 도시철도(토지, 입목 뿐만 아니라 건물, 구축물 등 포함)
- ③ 하천부속시설(토지, 입목 뿐만 아니라 건물, 구축물 등 포함)
- ④ 농수산업기반시설의 농로(기계화경작로), 소류지와 방조제
- ⑤ 댐 중 사방댐
- ⑥ 어항 및 항만시설 중 방조제, 방파제 등
- ⑦ 기타사회기반시설 중 자치구·읍·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 시설(하수관거, 마을광장 포장, 배수로정비공사 등), 임도·사방사업시설물 등 산림시설

라. 대체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수선유지비가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서비스잠재력이 취득 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가로등과 같은 도로 부속 구축물은 일정 기간 사용 후 교체될 것이 명백하므로 도로포장 부분과는 특성이 다르지만, 도로의 필수적인 부속시설이므로 주된 시설과 같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

※ 철도차량은 일정 기간 사용 후 폐기될 것이 명백하며, 선로 등 도시철도 구축물의 부속설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감가상각 하여야 함

2) 공공서비스 잠재력 유지자산

가.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지보수 활동 등을 통해 본래 자산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유지되는 특수자산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유지보수에 투입된 지출을 모두 비용처리 가능함

나.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유지되는 자산에는 공공서비스 직접적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일부자산이 해당됨

다. 도로와 도시철도의 경우 그 사용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유지되므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함

※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제외

3)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

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자산인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도시철도 등의 유형자산은 위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함

나.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도 비가동 설비자산, 입목, 토지 등은 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음

다. 일반회계의 지출 중 상하수도사업 등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로 각각 표시함

4) 사회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관 등)의 수선, 교체, 감액 등에 따른 회계처리

가.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이 재해 등으로 인한 유실로 일부가 파손되어 복구하는 경우 유실구간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복구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함

나. 상·하수도관의 교체시에는 교체되는 구간의 장부가액을 제각하고(감액손실로 처리), 교체에 투입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자산으로 등

록함. 제각순서는 다음과 같음

- (1)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될 경우 해당지역, 구경, 연장(m), 금액을 파악하여 제각함
- (2) 교체대상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지역, 구경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수도관 중 가장 오래된 수도관의 구경, 연장, 금액을 제각함 (연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금번에 교체하는 관의 연장 금액만큼 안분 계산하여 제각)

다. 상·하수도관 중에서 기존 상·하수도관 등과 연계하여 차감 처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교체·개량·정비와 관련된 지출액은 비용으로 처리함(다만, 상·하수도관 등 구축물에 대한 단순한 수선·보수·방수·세척·준설비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비용(수선유지비)으로 처리)거래와 회계처리

제4장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제4장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제1장 총 칙

제1 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현황 : 이원체계(Dual system)

예산회계제도 :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에 의해 시행

재무회계제도 : 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

2. 지방회계기준의 제정 목적

- (1)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책임성과 재정투명성을 제고
- (2) 지방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등의 결과가 객관적이며 통일된 회계처리와 양식에 따라 보고 될 수 있도록 일반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령을 우선 적용

제 2 조(적용대상 등) ①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2012.1.1 시행)

예습

1. 기준의 적용대상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2. 기준의 해석 및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행안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름
3.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과 회계 관습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 방법을 결정함
 - (2)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는 유사한 거래 및 회계사건에 적용되는 지방회계기준 및 재무회계 운영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기준과 일관성이 있는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공회계 기준 등이 포함됨
 - (3) 회계관습은 회계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존중되고 받아들여지는 관습적인 규칙을 말함

제 3 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개별 회계실체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 나. 유형별 회계실체 :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 다. 통합 회계실체 :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예습

1. 공정가액
 - (1) 자산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 (2) 토지의 경우 취득원가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정가치로 평가
(단, 공시지가 없는 경우 인근토지의 최저가로 대체평가)
2. 내부거래는 그 성격에 따라 채권과 채무거래, 수익과 비용거래 및 출자와 자본거래로 구분
- 가. 채권과 채무거래 : 예탁금(채권) - 예수금(채무)
- 나. 수익과 비용거래 : 예탁금이자수익(수익) - 예수금이자비용(비용)
- 다. 출자와 순자산거래 :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출자) - 순자산증가(순자산)

제 4 조(재무보고의 목적) ①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애 **스**

1. 공공회계책임
 - (1) 수탁관리책임 : 예산 및 회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의 유·출입과 재정상태 변화 기록하는 책임
 - (2) 운영관리책임 : 사업수행의 목적달성, 채무상환능력, 재정운영의 효율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3) 재무보고책임 : 회계처리 및 결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이를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

2. 기관간 형평성

지방자치단체 활동수행에 있어서 서비스 제공과 조달된 재원수준을 비교하여 현재의 수익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장애의 주민에게 재원부담을 전가했는지에 관한 정보

제 5 조(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예(예)

1. 충분성의 원칙 산출근거인 회계방침 및 회계처리기준 공개
2. 계속성의 원칙 회계자료의 기간별 비교가능성, 임의적인 회계원칙의 변경을 통한 재무제표의 왜곡을 방지
3. 중요성의 원칙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항목의 성격(환경, 규모, 인구 등 질적 기준)과 금액(양적 기준)의 크기에 의해 결정
4. 실질우선의 원칙 (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처리함

제 6 조(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① 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보고실체

- (1) 보고실체는 재무보고서를 발행하는 주체로서 통상 지방자치단체 즉, 시·도 및 시·군·자치구를 의미
- (2) 지방공사, 공단은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대행하는 기관이기는 하나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실체에 포함되지 않음

2. 회계실체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구분에 따른 회계실체 유형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2) 활동 성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고유한 활동을 수행하는 행정형 회계실체와 재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기업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음

제2장 재무보고서

제 7 조(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예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정보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 이외에 결산총평,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와 같은 정보를 포함

1. **결산총평** :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압축적인 기술로 크게 서문과 재정분석·통계자료로 구성됨
2. **재무제표** : 재무보고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3. **필수보충정보**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부속명세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필수정보를 말함
4. **부속명세서** :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하는 추가 정보를 말함

제 8 조(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예

1. 재무제표는 보고실체 즉,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되는 것

으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각 회계별 재무정보를 통합한 재무제표를 의미함

- (1) 재정상태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표시
- (2) 재정운영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회계기간의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
- (3) 현금흐름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회계기간의 현금수지를 표시
- (4) 순자산변동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 변동상황을 표시

2. 회계별 재무정보의 종류

-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 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 (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제 9 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1. 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

- (1)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연결의 방법에 의해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연결의 방식이란 재무적 연계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상계한 다음 통합하는 방법임
- (2)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합하기 이전에 각 해당 유형에 속하는 단위사업(개별 회계실체)을 합산하여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침

2. 통합재무제표의 양식 : 비교 및 다열(Multi-column method)의 형식

(1) 비교형식의 재무제표

- 가.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와 직전 회계연도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성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함
- 나. 회계정책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2) 다열 형식의 재무제표

통합재무제표는 회계실체 유형별 재무제표의 통합과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다열의 형식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이들 간의 내부거래를 나란히 표시하고 유형별 회계실체의 합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액을 통합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표시함

3. 출납폐쇄기한의 인정

- (1) 출납폐쇄기한은 예산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예산회계 상의 현금액과 재무회계상의 현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재무회계에서도 인정하는 것임

(2) 출납폐쇄기한 내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무회계 운영규정 중 결산 부문에서 설명하고 있음

표 비교 및 다열 형식의 재정상태보고서 사례

| 구 분 | 2xx7년도 | | | | | | 2xx6년도 | | | | | |
|-----|--------|----------|-------|-------------|-------|--------|--------|----------|-------|-------------|-------|--------|
|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 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 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 ... | | | | | | | | | | | | |
| 미수금 | 10,000 | 5,000 | 5,000 | 1,000 | 3,000 | 18,000 | 9,000 | 4,000 | 4,000 | 900 | 2,000 | 15,900 |
| ... | | | | | | | | | | | | |

※ 계(통합재무제표 금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 10 조(재정상태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중 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 11 조(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1. 재정상태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B/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재정상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2. 자산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미래 경제적 효익과 함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자산의 정의에 포함

3. 부채의 정의

- (1) 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가 미래에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
- (2) 지방채는 증서의 형태로 차입하는 차입금과 채권(bond)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음. 형식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됨

< 사례 : 미래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 >

- 예산회계(현금주의)에서 채무로 기록하였던 **지방채 등의 법적채무**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재무회계에서도 부채로 처리함
 - * 다만, **채무부담행위**는 채무의 확정행위가 없어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채가 아님.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과 같은 발생주의항목은 예산회계에서는 채무로 기록하지 않으나 재무회계 부채

4. 순자산의 정의

- (1) 정부부문은 기업과 달리 소유자인 주주(또는 출자자)가 없어 기업회계에서와 같은 자본금 또는 지분 개념이 없음
- (2)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정부회계의 순자산은 장래 세대가 받게 되는 순편익(Net benefit)에 해당

제 12 조(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 자산의 인식기준

- ①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함
- ② 공공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여야 함
- ③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2. 관리책임자산의 정의 및 인식여부

- (1) 관리책임자산이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을 말함
- (2) 관리책임자산은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지자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관리책임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자산 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

제 13 조(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備忘計定)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 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애설

1. 유동성 원칙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성격에 따라 일반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로 구분), 기타비유동자산 순으로 표시하고,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으로 표시함

2. 총액주의 원칙

서로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3. 미결산항목의 정리

(1) 가지급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의 내용이 나 금액, 거래처 등이 확실치 않아 회계연도 중에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임(예: 주민세의 수납분 중 개별목이 미확정된 부분을 임시로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2) 임시계정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규명하여 해당되는 계정과목으로 대체

제 14 조(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제 15 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예

1. 유동 /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 비유동자산을 사용목적에 따라 투자자산, 일반유형, 주민편의, 사회기반 등으로 분류
2.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으로 크게 분류됨. 현금성자산이란 취득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채권, 환매채 등)과 취득시 3개월 이내의 만기계약을 가진 단기금융상품(정기예금, 기업어음, CD 등)
 - (2) 사례 :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 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은 자치단체가 계약 또는 법률상 원인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반환해야 할 성격으로, 보관현금은 자산(세입세출외보관현금)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부채[단기(장기)예수보관(증)금]를 인식함
 - 나. 다만,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아닌 기타유동자산(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또는 기타비유동자산(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하도록 함.
3. 단기금융상품
 - (1) 여유자금의 운용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이며, 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함(현금성자산은 제외)

- (2) 사례 :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장단기금융상품 및 장기투자증권의 구분
- 가.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보통예금 등의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분류
 - 나. 정기예금·정기적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
 - 다. 지자체가 보유한 주식, 출자금, 국·공채 등은 대부분 장기자금운용 목적이므로 투자자산 내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
- ※ 유의사항 : 재정자금과 관련된 자산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3. 미수세금

미수세금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등을 포함하며 체납된 세금(가산금 포함)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

※ 유의사항 : 지방세에 대한 미수세금 중 체납된 것은 체납기간의 장, 단기에 불구하고 모두 유동자산인 미수세금에 포함

4.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세외수입금은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징수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서 징수유예, 연부연납액 중 징수결의된 금액도 포함하며 체납된 세외수입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

5. 미수징수교부금, 정부간이전수익, 단기융자금, 재고자산(판매용부동산 및 판매용물품, 저장품) 등

제 16 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예시

- (1) 정기에금·정기적금 등을 자금운용 목적으로 보유한 것 중에서 결산 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2) 장기융자금은 민간, 타 자치단체 또는 타 회계에 대한 자금융자에 따른 채권,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
- (3) 장기투자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간접경영방식으로 운용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민관공동출자기업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투자주식 및 투자채권
 - ※ 유의사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접경영방식으로 운영되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본형성적 전출금은 장기투자증권과는 별도로 기타투자자산으로 표시. 다만, 타 회계, 기금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사·공단에 대한 전출금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
- (4) 장기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제 17 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제 18 조(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제 19 조(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예습

1.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등으로 구분. 그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주된 용도가 공공서비스 제공이면 시설 전체를 일반유형자산으로 구분
2. 주민편의시설은 그 자산의 실질적인 사용형태에 따라 해당 회계과목으로 구분. 즉, 각 법률의 내용과 실질적 사용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목적대로 자산을 분류
3.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농수산기반시설, 댐, 어항 및 항만시설, 기타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인 사회기반시설을 포함
4. 각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토지와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임차개량자산 등 해당자산을 구성하는 부속자산은 모두 각각의 해당자산에 포함하여 표시함

제 20 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예습

1. 기타비유동자산의 정의
기타비유동자산에는 보증금과 지적재산권(산업재산권 포함), 전산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됨
2.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과

공공서비스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자산임

- ①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은 권리가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함. 예컨대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② 통제가능성 : 무형자산은 소유 권리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함. 예컨대, 향토지적재산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확보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 유의사항 : 문화재, 역사적 건물 등 유산자산 및 산림자원, 광산자원 등과 같은 자연자원은 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며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는 관리책임자산으로 필수보충정보로 별도 표시함에 유의

제 21 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 22 조(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제 23 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제 24 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에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예

1.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 또는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부채
 - (1) 단기차입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 차입한 채무로 차입일

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차입일(또는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단기예수금

-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부채 중 기간의 경과로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을 말함

2. 기타비유동부채의 구분

- (1)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장
기예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장기미지급금 등
- (2) 퇴직급여충당부채는 금액, 지급시기 및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부
채로 발생주의 기준에서는 부채에 해당
- (3) 장기예수보증금 : 계약이행 및 용역제공을 보증받기 위해 수취한 자
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결산일로부터 1년 후에 반환
- (4) 장기선수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무상사용
허가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계상한 금액, 무상사용 허가기간 중 발생
하는 임대료 등 수익상당액은 장기선수수익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제 25 조(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
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
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
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예

- (1) 정부회계에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서

- 장래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향유하게 되는 순편익 (Net benefit)으로 기업회계의 자본과는 그 성격과 의미가 다름
- (2)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에는 양도와 처분이 제약되는 사회기반시설,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순자산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여 표시하는 것이 필요함
 - (3)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은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실제로 회계실체가 필요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은 일반순자산임
 - (4) 특정순자산은 감채기금 등 적립성 기금이 대표적 사례이나 회계기준에서는 모든 기금의 순자산을 특정순자산으로 봄
 - (5) 일반순자산 = 순자산총계 - (고정순자산 + 특정순자산)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 (재정운영보고서)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 가. 총원가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 나. 사업수익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 가. 관리운영비 :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 나. 비배분비용 :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다. 비배분수익 :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일반수익을 뺀 것

③ 제9조 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에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예

재정운영보고서의 구성

- (1)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정보를 표시하는 재무제표
 - (2) 재정운영보고서의 원가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사업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재정운영순원가 = 사업순원가(합계)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
 - 재정운영결과 = 재정운영순원가 - 일반수익
 - (3) 재정운영보고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I/S)에 대응되는 개념이지만,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정보내용은 기업회계와 상당히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보고서의 성격, 개념, 구성체계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정의 필요
- 가. 정부회계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에 투입된 원가(비용)와 재화의 판매

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직접 연계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와 같은 수익-비용 대응원칙(matching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음

제 27 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1. 수익의 정의

- (1) 순자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증가를 말함
- (2) 정부회계에서 수익
 - 가.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 :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하는 수익
 - 나.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 : 조세수익, 보조금, 기부금 등 재화 및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하는 수익
- (3) 순자산이 증가하더라도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증가,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증가와 같은 거래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증가와 순자산증가로 처리한 후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그 내역을 표시함

2. 비용의 정의

- (1)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형태로 회계기간 동안의 경제적 이익의 감소
- (2) 비용은 소멸된 원가(expired cost)로서 당해 기간의 수익에 대응되는 것으로 원가 중 소멸된 부분을 의미
- (3)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관리전환에 의한 자산감소와 같은 거래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감소와 순자산감소로 처리한 후 순자산변동보고서에 그 내역을 표시함

제 28 조(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의 원칙에 따라 구분

제 29 조(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보고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 29 조의2(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발생주의 : 모든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인식

가. 발생주의에 의할 경우 현금의 수입이 없더라도 수익이 발생(실현)하면 수익을 인식하고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을 계상. 현금의 지출이 없더라도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을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이라는 부채를 계상

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2) 원가계산준칙 제정(행정안전부 훈령제185호) : '10.12.7

제30조 (일반수익의 분류) 일반수익은 자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조달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

3. 기타수익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제31조(자체조달수익), 제32조(정부간이전수익), 제33조(기타수익), 제34조(비용의 분류) <삭제>

예

1. 수익의 분류기준 : 지자체의 재정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원의 원천을 기준

- (1) 자체조달수익 : 지방세수익, 과태료수익,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변상금및위약금수익 등
- (2) 정부간이전수익 : 지방교부세수익, 재정보전금수익, 조정교부금수익 등

2. 재정운영보고서의 종류(비용분류 기준)

- (1) 재정운영보고서에서 비용 분류는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구분
- (2) 비용의 기능별 분류란 정부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등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또는 프로그램, 활동, 사업)별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식을 말함
- (3) 성질별로 비용을 구분하는 방법은 기업회계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분류기준
 - 비용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관리회계적 기법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분류로서 대표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분류됨
- (4) 지방회계기준은 재정운영보고서의 형태를 우리나라 지자체 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주된 재무제표로 하고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를 필수보충정보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 35 조(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 현금흐름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 36 조(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 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 37 조(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 38 조(순자산변동보고서)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는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중 순자산변동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예습

- (1) 지방회계기준은 순자산의 변동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재정운영보고서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순자산변동보고서를 기본 재무제표로 설정
 - 이것은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내역에 관한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전년도의 기초순자산에 대해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말순자산을 산출

제 39 조(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한다.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

예습

- (1) 관리전환 및 기부채납에 의한 자산의 증감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거래로서 복식부기회계에서는 이들 예산외거래에 대해서 회계처리에 포함하기 때문에 순자산변동보고서에 표시
- (2) 기부채납 또는 관리전환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이들 자산의 공정가액을 자산의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순자산의 증가사항으로 반영함
- (3) 이외에 전기오류수정이익(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손실) 등의 사항을 순자산의 증감사항으로 처리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관리전환, 양여 등 모두 순자산의 증가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 단, 현금으로 기부 받은 경우에는 기타 수익인 기부금수익으로 표시함
- ②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에 따라 발생한 이익(손실)은 재정운영보고서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모두 순자산 증감사항으로 표시

제7장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 40 조(결산총평) ①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② 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설명으로 구성된다.

③ 주요특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요,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④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 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⑤ 재무분석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및 지표에 관한 분석내용을 말한다.



재무분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및 자산·부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및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대체로 시계열 분석자료 및 재무비율지표 등으로 제시됨

제 41 조(주석) ① 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 **설**

-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나 운영실적 그리고 기타 재무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석의 형식으로 해당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2)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함

제 42 조(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예산결산요약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2의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2의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 회계실체(일반회계는 제외한다)의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예

- (1) 보충정보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나 부속명세서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에 관한 관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수보충정보로는 예산회계결산(현금주의)과 재무회계결산(발생주의)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금액의 차이 및 조정내역을 표시하기 위한 보충정보(예산결산요약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명세서 등이 포함

제 43 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부속명세서는 민간 부문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부속명세서 이외에 공공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

(예) 재정자금명세서, 일반유형자산명세서, 주민편의시설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지방세수익명세서, 징수교부금명세서, 정부간이전수익명세서, 업무추진비명세서, 행사운영비명세서 등

제 44 조(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른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예

- (1) 결산총평을 비롯하여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세부내용 및 양식 등은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실무적 지침인 재무회계운영규정에 명시
-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재무제표작성, 재무회계처리, 재무회계결산, 분개연계표(J.M.T), 부속명세서 서식, 재무제표 서식, 필수보충정보 서식, 모델 재무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 45 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예

- (1)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모든 자산은 취득원가에 의하여 계상하고 부대비용 포함.
 - * 예를 들면, 차량운반구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자체의 가액은 물론 등록세, 수수료 기타 부대비용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됨
- (2) 다른 자산과의 교환, 관리전환 또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예: 주민이 자치단체에 입목, 토지 등을 기부하는 기부채납 등)에는 유상취득원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여 취득원가로 함
- (3) 자산은 일반적으로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취득원가)을 감액하여 함

제 46 조(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

- (1)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 (2) 미수세금잔액에 과거 3년간 평균 결손경험율과 같은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세목별로 설정

제 47 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예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방법은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구분하나, 회계연도 중에는 계속 기록법에 의해 대장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회계연도 말 실제로 재고내역을 조사하여 대장수량을 실제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

제 48 조(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 (1)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예: 수수료, 세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함
- (2) 장기투자증권의 단위당 가격 결정은 동일한 종목별로 총 평균법(연간 총 취득원가/총수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위당 총 평균원가는 회계연도 말에 확정되어 회계연도 중의 처리에 불편이 따르므로, 필요할 경우 이동평균법 등에 의하여 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3) 장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함

- 가.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을 보유목적 및 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공정가액법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지만, 본 기준에서는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함
- 나. 다만,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투자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 본 기준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감액 평가하여야 함

제 49 조(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 (1)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며, 이때 취득부대비용이란 자치단체가 동 유형자산 등을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발생한 금액으로서 설치비, 운반비 및 시운전비 등을 포함
- (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
- (3)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회계기준에서는 정액법을 적용도록 규정
 -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임. 정액법은 매우 간단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음

제 50 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예

- (1)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주기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져 항상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잠재력(service potential)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2)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일부 자산(예: 철도 및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대체법을 사용
- (3) 대체법에 의하는 경우 유지관리비(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출)에 대해서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이유를 주석으로 공시함

제 51 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예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일반적인 취득원가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취득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산출

제 52 조(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예

유형자산은 취득 후 사용과정에서 그 기능유지, 개선을 위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처리

- (1)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 : 유형자산의 성능 또는 내용연수 등을 개선시키는 데 사용된 지출로 자산으로 처리함
- (2) 경상적 지출(current expenditure)은 유형자산의 능력유지비용이나 반복적이고 경상적인 수선 등에 관한 지출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함

제 53 조(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 (1) 부채의 금액측정 방법은 만기상환가액에 의한 평가, 역사적 시장이자율에 의한 평가, 현행 시장이자율에 의한 평가 등
- (2) 본 기준에서는 부채금액을 만기상환금액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증권과 장기채무 등의 경우 역사적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에 의해 평가를 하도록 함

제 54 조(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예

- (1) 지방채증권을 발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 발행가액에서 조정하지 않고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함
- (2) 지방채증권 발행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동 차액을 지방채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하도록 함
- (3) 유효이자율법이란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명목가액에 대한 액면이자율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의 장부가액에 발행당시의 역사적 시장이자율(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계산하고 채무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함

※ 지방채증권 발행가액

액면발행 (액면이자율=시장이자율), 할인발행(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할증발행(액면이자율 > 시장이자율)

제 55 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는 급여의 일부로서 미래에 지급될 퇴직금상당액을 당기비용(퇴직급여)으로 인식하고 동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누적하여 인식하여야 함

제 56 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해설

(1) 단기채권은 만기 회수가능금액에 의하여 평가하고 단기채무는 만기

상환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 명목가액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음

- (2) 장기대여금, 장기미지급금 등의 과목에 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평가를 적용

제 57 조(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예

- (1) 지방자치단체가 외화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화폐성 항목과 비화폐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화폐성 항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환율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계상하도록 함
 - 가. 화폐성 항목이라 함은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하더라도 항상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표시되는 항목으로서 화폐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이 발생하는 항목을 말함
 - 대표적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항목으로는 외국통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및 외화차입금 등
 - 나. 비화폐성 항목은 기간이 경과하거나 화폐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화

- 폐평가액이 변동하는 항목으로 주로 실물적 성격
- 대표적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항목으로는 미래 금전 이외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외화를 수수한 경우의 선급비용, 선수수익 등이 있음
- (2) 화폐성 자산·부채를 회계연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외화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의 재정운영 보고서 상에 공시하도록 함

제 58 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예 **설**

- (1)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정도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하며,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리를 적용하여 규정
- (2) 금융리스의 경우 실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있고 그 경제적 본질이 할부구입과 동일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기록하고 감가상각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부채로 기록하여야 함
- (3)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이 종료하면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다시 이전되는 것으로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자산의 소유권은 리스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리스자산을 이용하는 리스이용자는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음. 즉, 리스이용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리스료(임차료)를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고 리스회사는 리스료수익(임대수익)을 기록하고,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리스회사에서 기록함

제 59 조(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우발상황의 처리(기업회계원리를 적용하여 규정)

- (1)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은 그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부채의 인

식여부가 결정됨

(2)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발행한 부채나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독립채산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아니지만 이들 산하단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직면했을 경우, 이들 공사와 공단에 대해 행한 보증행위는 전형적인 우발부채에 해당함

(3) 다음 우발상황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판단없이 주석으로만 공시

가. BTO 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따른 추가 지급금

나. BTO(BTL) 사업 중도해지 또는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따른 중도해지 반환금

제 60 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한다.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 61 조(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 ①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보고서일과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예

- (1) 지방자치단체는 출납폐쇄기간의 존재로 인하여 재정상태보고서일부터 재무제표를 사실상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이 길고,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의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상태보고서일부터 출납폐쇄기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사건을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함
- (2)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그 영향을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에 반영.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추정치는 그 금액을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이를 새로이 인식

- (3) 재무제표에 반영할 재정상태보고서일 이후 발생사건의 예
- 가.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이미 자산의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 또는 감액손실을 인식한 자산에 대하여 금액수정을 요하는 정보를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입수하는 경우
 - 나. 재정상태보고서일 이전에 존재하였던 소송사건의 결과가 재정상태보고서일 후에 확정되어 이미 인식한 손실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제5장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해설

제5장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해설

제1절 총칙 해설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치단체 회계기준”이라 한다.) 제29조의 2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1.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의 개념

- 1)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재무회계를 채택한 주목적은 회계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의 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 예산회계는 현금으로 편성한 예산의 집행 및 관리통제를 위한 시스템임. 그러나 현금 지출액은 원가정보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으며, 그 결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없음
- 3)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원가정보는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가 제공함. 특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사업관리와 앞으로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4) 본 준칙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원가정보 산출을 위하여 원가대상별로 원가를 집계, 분류, 배분하는 원가계산에 관한 절차나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 있음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대상”이란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는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설

1. 원가대상(cost object)

- 1) 원가대상은 이러한 사업예산 구조에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임. 각 기능(function)의 원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자원을 소모하였는지를 알려주는 통계적 의미가 있음
- 2)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원가는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세부사업 원가는 특정사업에 대한 원가정보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2. 원가배부

지방자치단체의 원가배부는 회계연도 동안에 사업수행을 위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각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함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준칙은 자치단체 회계기준 제2조 제1항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회계실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자치단체 회계기준 제26조에 의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③ 이 준칙은 특정한 사업 등의 원가분석 관리방법의 개선 등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원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1. 적용대상이 되는 회계실체

- 1) 원가준칙의 적용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함.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는 물론 직영공기업 특별회계도 포함됨
- 2) 다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6조 제3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2. 원가계산 준칙시행의 목적

- 1) 원가계산준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의 원가에 관한 정보를 집계·분류·요약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을 주목적으로 함
- 2) 재정운영보고서는 각 자치단체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순원가 정보와 관리운영비의 정보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의

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임

- 3) 원가계산준칙은 성과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하거나 관리방법의 개선 등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목적의 원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적용할 수 있음

제4조(원가계산의 목적) 자치단체 원가계산의 목적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사업 등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가와 산출물이나 성과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2. 사용자 부담기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원가회수 정도와 독립채산제의 운영 여부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사업관리와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3. 성과목표 수립이나 평가 등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이나 특정 사업이나 활동의 효율적 수행 여부, 관리운영 방법의 능률성 검증 등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하게 한다.
4. 사업 등의 원가정보나 관리운영비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더 나은 회계책임성 평가를 하도록 하며 아울러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해설

1.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초 정보제공

- 1) 지방자치단체의 발생주의 회계의 가장 중요한 편익은 사업이나 활동의 원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관리 및 예산배분 등의 의사 결정에 원가 및 효과를 같이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2) 예산회계는 사업에 대한 지출금액만을 표시하고 사업과 관련한 투입원가 정보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아들인 수익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관리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투입비용의 내역을 알 수 없었음. 수익도 사업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없어 그 금액을 알 수 없으며, 사후 결산서의 기초자료에 의하여서도 확인할 수 없음
- 3) 그 결과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비 등 투입금액이 현저히 증가되고 예상된 편익은 감소될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사업관리자가 사업추진과정에서 회계정보에 의하여 알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 4) 현행 전산시스템은 각 사업관리자가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를 일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e-호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관리자는 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재무회계의 원가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됨

2. 원가회수 정보 및 독립채산제 달성 여부 정보제공

- 1)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에 포함된 쓰레기수거업무 등은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사업형 회계임
- 2) 이와 같은 사업형 회계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보와 일반회계 등으로부터 전입 받은 수익 등의 정보를 별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원가를 제대로 회수하는지 여부를 알려줄 뿐 아니라, 회계실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사업관리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계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함

3. 성과관리 및 관리방법 등의 개선

- 1)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의 원가정보가 산출되고 이의 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는 원가정보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성과평가 자료로 사용하여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을 가능하게 함

- 2) 예를 들어 주민 1인당 쓰레기 수거 단위 원가를 절감하는 것으로 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발생원가에 의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일정 면적당 공원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이를 사후 평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4. 회계책임성 평가와 투명성 개선

- 1) 회계책임성(financial accountability)은 어느 개인에게 재정상의 임무가 부여된 경우 그 임무를 어느 정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타인의 재산의 수탁관리에 대한 책임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2) 전통적인 회계책임성은 예산이나 법규에 정한대로 순응(compliance)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더 나은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러한 평가의 기초로서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
- 3) 발생주의 재무회계 정보의 핵심은 정책사업의 순원가 정보임. 필요시에는 단위 및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를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함. 즉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당초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입비용을 과소 추산하였는지, 추산한 편익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등 문제점을 보아 집행주체의 회계책임성을 평가할 수 있음
- 4) 만약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한 경우에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나 의회관계자의 자료요구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순원가 내용과 사업계획 자료 등을 획득, 이를 비교하면 계획대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쉽게 알게됨

제5조(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 지방회계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형 및 사업형 회계실체 구분에 따라 사업 등의 원가계산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1. 회계실체의 구분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6조 제2항은 회계실체를 행정형 및 사업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2) 행정형 회계실체(governmental type accounting entity)는 징수한 지방세나 보조금, 부담금, 제재금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재(public goods)를 공급하는 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 3) 사업형 회계실체(business type accounting entity)는 직영공기업 특별회계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등 개별적인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독립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함
- 4) 사업형 회계실체는 원가회수와 독립채산제 및 자본(기금)유지의 성격을 가지며 비지불성 자금과 관련된 회계로 수도·쓰레기·하수도·주차장·버스·지하철·수영장·병원·양로원·공공주택·도로통행료 등 광범위함
- 5) 현재 사업형 회계실체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함. 단 규모가 작은 상·하수도 관련 기타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2. 회계실체별 원가계산 차이

- 1) 사업예산 체계에서 사업예산은 모두 직접비로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행정형 회계의 원가계산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정책

- 사업,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직접비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경비는 별도로 편성하여 관리운영비로 처리함
- 2) 상수도 특별회계와 같이 사업형 회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업인력이 많으며, 현업 종사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재화나 용역의 원가에 직접 대응하거나 간접비로 배부하여야 함. 본부의 관리인력과 이들이 집행하는 운영경비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함
 - 3) 원가계산의 정보가 주는 의미도 행정형 회계의 경우 사업 등의 순원가를 보여주는 정보지만, 사업형 회계의 경우 제공한 서비스의 원가회수정도를 보여주는 차이가 있음

제6조(원가계산의 일반원칙) 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원가는 자치단체 회계실체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③ 원가 집계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④ 자치단체 회계실체는 원가계산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1. 신뢰성(reliability)의 원칙

- 1) 신뢰성의 원칙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표

현의 충실성)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회계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검증가능성)는 원칙임

- 2) 원가계산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바 원가회계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막연한 추정이나 검증 되지 않은 자료로 하여서는 아니됨

2. 사업 관련 원칙 및 발생주의 원칙

- 1) 정부회계의 원가계산은 사업예산 체계에서 집행한 정책사업,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등 사업과 관련하여 계산함
- 2) 정부 원가계산은 비용의 기본적인 인식기준인 발생주의 기준으로 계산함

3. 배부기준의 원칙

- 1) 원가 집계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 2) 원가집계는 체계적 방법으로 원가자료를 모으는 과정으로 원가할당은 원가대상과 보고기간 내에 원가를 식별하여 집계하는 과정을 말함. 여기서 원가대상은 어느 부문의 원가로 측정되는 활동 또는 항목을 말하는 데 넓은 의미로 원가대상은 조직, 사업, 활동, 임무, 생산품, 서비스 또는 고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정부회계에서 최종 원가대상은 정책사업이나 활동임

4. 계속성의 원칙(consistency principle)

- 1) 유사한 경제적 사건들은 회계기간 사이에 계속적인 방법으로 기록·보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정부 원가계산에서도 회계실체는 원가계산 준칙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됨

- 2) 채택한 원가계산방식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사업별 투입원가나 원가의 회수정도 등에 대한 회계정보의 내용이 왜곡되기 때문임

제2절 원가의 계산 해설

제7조(원가대상의 설정) ① 원가대상은 의사결정이나 관리통제가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부사업이 여러 종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해설

1. 원가대상(cost object)의 설정

- 1) 재무보고를 위한 원가계산에서 원가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업예산 편성단위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됨
- 2) 그러나 특정업무에 대한 외주여부의 의사결정이나 효율성 검증과 같은 관리목적의 경우 사업예산의 편성단위와 달리 그 원가대상을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상으로 임의로 정할 수 있음

2. 원가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예산의 정책사업 등

- 1) 사업예산에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더라도 행정운영경비는 별도의 사업이 아니며 관리운영비의 항목에 속하므로 원가대상이 되지 않음

- 2)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이나 단위사업내의 내부거래 지출, 또는 세부사업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전출금 등으로 전출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와 같이 재무활동이나 내부거래 지출과 같은 거래유형을 표시한 것은 원가대상이 될 수 없음. 이 경우 당해 전출금의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을 명시하여야 함 (예 : 교통시설 운영합리화 등)

제8조(총원가) ① 사업의 총원가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배분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분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② 다른 부서에서 배분 받거나 배분한 배분원가는 특정 사업 등의 경비를 특정부서에서 집행하였으나 그 부담이 다른 사업 등과도 관련되어 집행비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배분한 경우 등에 발생된다.

해설

1. 총원가(full cost)

- 1) 총원가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배부 받은 간접비를 더하고 배부한 원가를 빼서 계산 함
- 2) 직접 투입한 원가는 각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의 분야, 부문 및 정책사업 등 별도로 편성된 예산상의 경비를 집행한 금액에 대응하여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상한 원가를 말함
- 3) 간접비는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둘 이상의 세부사업을 담당할 때와 같이 공통적으로 집행한 경비를 배부한 금액을 말함. 다른 부서로부터 배부 받거나 배부한 간접원가를 배분원가라 함
- 4) 즉, 총원가 = 직접원가 + 간접비 + (-) 배분원가로 표시됨

2. 배분원가

- 1) 배분원가는 예를 들어 총무부서에서 사업부서의 특정 세부사업에 투입되는 무기 계약직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을 부담한 경우에 이 금액은 해당 사업부서에 실제 종사하는 세부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말함. 즉 다른 부서의 사업에 직접 소요되지만 지출부서가 다른 경우 해당 부서의 세부사업에 배부하는 것을 말함
- 2) 또한 한 사업부서에서 축제사업 등의 경비를 일괄 집행하고 그 집행경비를 해당되는 여러 사업부서간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발생함

제9조(직접원가) ①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직접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2.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 및 이전비용
 3.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포함한다)
- ②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해설

- 1)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구분은 원가가 원가대상에 추적되어지는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임
- 2) 직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을 위해 발생된 원가로서 특정 추적서비스나 활동, 제품에 직접 사용된 원가를 말함
- 3) 사업예산 체계 하에서 각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각 세부사업의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모두 직접원가에 해당함. 특히 행정형 회계의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비로 처리함

- 4) 각 사업부서나 지원부서(기획, 총무부서 등)의 일반행정 정책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더라도 특정 서비스 제공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운영경비는 특정 세부사업의 직접비로 처리하거나 간접비로 처리함
- 5) 쓰레기 수거, 청소, 도로 유지보수, 주차장 관리, 불법 광고물 단속, 공원 관리 등과 같이 현업에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나 총무부서의 일반행정 정책사업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더라도 이들의 인건비는 당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사업의 직접 원가로 처리하여야 함

제10조(간접원가) ① 간접원가는 여러 사업의 추진에 사용되어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원가를 말한다.

② 간접원가는 적용가능성,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 간접원가에 포함되지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원가대상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목적으로는 배분할 수 있다.

해설

- 1) 사업을 위해 사용한 원가가 특정 제품이나 용역, 산출물과 직접 관련되지 않고 여러 재화나 서비스를 위해 발생된 원가를 간접원가라 함
- 2) 행정회계에서 간접원가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으나 특정 세부사업에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의 원가를 말하며, 동일부서의 다른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부서 내 간접원가)와 다른 부서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부서간 간접원가)로 구분함
- 3) 간접원가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지만 관리운영비는 별도 구분 표시함

제11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한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해설

- 1) 간접비 배부방법을 표시한 각호는 우선순위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적용방법을 열거한 것임
- 2) 간접비 배부기준은 적용 가능하고, 산출이 용이하며,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계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배부하여야 함
- 3) 예를 들어 각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부서의 무기계약직의 공통 운영경비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부할 수 있으며, 사무실의 경우에는 사용면적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제12조(사업순원가) ① 사업순원가는 원가대상의 총원가에서 그 원가대상의 사업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사업의 추진에 투입한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을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설

- 1)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사업이나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투입원가(input cost)과 편익(benefit) 즉, 산출(output)을 비교하는 등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고 있음. 사업순원가는 특정 사업의 투입비용과 재무적인 편익 즉, 당해 사업에서 직접 벌어들인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순 자원소모액인 원가를 알려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박람회, 축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전체 경비와 함께 행사에 따른 수익의 내용을 사업관리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편익을 판단하거나 회계책임성 평가에 도움이 되며, 사업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도 기초정보를 제공함

제13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 등을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해설

- 1) 사업수익은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에서 제공한 서비스 대가로 직접 수익을 획득하거나 사업의 관계인(국가나 다른 자치단체, 기금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보조금수익을 말함. 사업수익은 자치단체의 일반수입으로 재원지원을 받아야 할 특정 기능의 순원가를 감소시키게 됨
- 2) 사업수익은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으로 구분됨

제14조(서비스 요금수익) ① 서비스 요금수익은 재화·서비스의 판매수익 등과 같이 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장생산수익, 의료사업수익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
2. 수입대체경비 수익
3. 기타 서비스요금수익

②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금 수익, 변상금, 위약금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비교환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

③ 서비스요금 수익이지만 원가대상별로 식별하기 곤란하고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설

- 1) 서비스 요금은 교환거래와 준교환거래에 기초한 수익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수입, 면허나 허가와 같은 특권 수수료 수입 등 서비스를 직접 수혜 받은 신청자나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가로 받아들이는 수입을 말함
- 2) 서비스 요금수익으로는 지방공기업이나 관업과 같은 상하수도·쓰레기·주차장·버스·주민체육시설·수영장·의료·공공주택·화장장 등과 이에 유사한 용역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이 있음
- 3) 행정형 회계에서도 행사성 사업의 관람시설 입장료, 관유물대여료 등과 각종 행정관련 면허료·수수료, 실습수입, 시설사용료, 수입대체 경비 수입 등과 자체조달 수익 중 경상세의 수익¹⁴⁾에 해당하는 재산임대수익,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익도 이에 해당함

14) 경상세의 수익은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세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료수익,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수익, 징수교부금수익, 이자수익 등을 말한다.

- 4) 서비스 요금수익은 원칙적으로 교환거래 수익에 해당하므로, 주차위반을 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비록 정상세외수익에 포함되고 교통시설 관리사업의 재원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납부자의 비자발적인 의사로 납부한 것으로 교환거래가 아니므로 프로그램 관련수익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됨
- 5) 징수교부금 수익은 비교환거래 수익인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원 받는 것으로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익이라 볼 수 없음
- 6) 여권발급 등 신청인으로부터 여권발급에 따른 경비로서 특정 서비스 요금으로 받았으나 그 수입 징수 형태가 지방세 수입증지와 같이 여러 민원업무에 관련되고 활동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수익으로 처리함
- 7) 수익이 실제 서비스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명목상의 징수(예, 서비스 요금으로 100원 징수)이거나 금액이 소액으로 사업관리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15조 (보조금 등) ① 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전받은 보조금 및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민간으로부터의 이전수익을 말한다.

②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운영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다만,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자본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로 처리한다.

③ 특정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등에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같이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해설

- 1) 보조금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 법인이나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한함), 부담금, 기타 상당한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또는 민간인으로부터 받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특정 사업 관련 보조금이나 기부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관리운영비에 포함된 공무원인건비(예: 여권발급, 가족관계등록) 등이 보조된 경우, 해당공무원이 수행하는 세부사업의 사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 3)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비자산의 구입, 건설 또는 리모델링 등에 사용하는 자본보조와 생활보상 대상자의 보호사업과 같은 운영보조로 구분할 수 있음
- 4) 운영보조의 경우 사업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자본보조의 경우에는 수익과 대응하지 않고 일반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함
- 5) 특정 사업에 관련되지 않고 두 가지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은 사업 수익으로 처리하지 말고 일반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함. 다만, 특정한 사업과 관련되어 시설과 운영을 동시에 보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여러 사업에 대응되지만 실제 집행되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사업수익 또는 일반수익으로 처리함

제16조(재정운영순원가)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실체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의 추진 및 행정조직 운영 등 그 실체의 경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사업형 회계실체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서비스 제공 및 조직 운영 등 그 실체의 활동에 사용된 원가 및 기타경비의 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설

- 1)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와 사업외 비용을 더하고 사업외 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 2) 재정운영순원가는 기업회계의 경상손익(ordinary profit and loss 經常損益)과 같은 의미이나,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는 경상적인 사업이나 기관운영 등 재정활동에 소요된 순원가와 운영경비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수익을 제외하는 면에서 다름
- 3) 예산회계의 자금규모인 지출에 대비하여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활동의 원가를 보여주는 면에서 의의가 있음
- 4) 사업형 회계의 재정운영순원가 정보는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금별로 경상적인 활동에 소요된 자원의 규모를 알려주어 기금유지나 독립채산제 달성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함
- 5) 사업형 회계의 순원가는 비교환 수익과 세금 등 일반수익이 필요함을 표시함. 부(-)의 순원가인 경우 부담금 등으로 충분한 기금유지나 독립채산제를 달성하고 있음을 의미함

제17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운영경비를 말한다.

② 일반행정 기능에서 사업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일반관리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시민 등이 직접 편익을 보는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③ 서비스 요금책정의 기초자료 작성, 관리방법의 개선, 특정 업무의 외주 방식 검토, 타 자치단체와 비교 등을 위한 관리회계에서는 관리운영비도 간접비로서 배부하여 의사결정 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1. 관리운영비의 개념

- 1) 관리운영비는 기업회계의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와 같이 조직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운영경비 등을 말함
- 2)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됨. 이러한 경비는 절약이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됨
- 3) 사업원가는 재정수요나 수혜자의 증감에 따라 사업비를 늘리거나 줄여야 하는 등 조장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절약과 통제대신 사업의 효과와 원가를 고려하여 집행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주된 문제가 됨
- 4) 관리운영비는 넓은 의미에서는 프로그램 수행을 지원하는 간접원가이지만 프로그램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경비로서 표시함

2. 관리운영비의 범위

- 1)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기능 900비목)로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만을 포함하고 있는 데 기본경비는 부서업무 추진비, 사무용품이나 급량비와 관내 여비만을 계상하고 있음
- 2) 이러한 기본경비 이외에 청사 유지관리나 차량 운행에 따른 제비용, 제세공과금, 기관운영에 필요한 각종 업무추진비, 일·숙직 및 국내외 여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포상, 각급 교육기관의 위탁교육이나 자체교육 경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성과 포인트, 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홍보나 행사경비 등이 있음
- 3) 따라서 지방행정 역량강화(총무과), 기획관리(기획예산과), 구정홍보(홍보과), 창의혁신 구운영(창의혁신과), 전산업무(전산실), 재무행정(재무과) 등의 활동은 지원부서 활동이기 때문에 사업원가가 아니라 관리운영비로 처리하여야 함

3. 관리운영비의 간접비 배분

- 1) 서비스 요금책정이나 특정 업무의 외주방식 검토 등 특정 세부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원가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도 간접원가의 일부이므로 이를 당해 사업이나 활동에 배부한 총원가를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음
- 2) 이 경우 원가산정은 당해 세부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관련 관리직의 업무 분석 및 활동이나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음

제18조(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등
2. 운영비 : 소모품비, 도서구입및인쇄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등

해설

- 1) 관리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며 인건비는 급여, 복리후생비 등으로 구분하고 운영비는 그 통제하여야 할 비목 요소별로 구분함
- 2) 이러한 구분은 1인당 복리후생비의 증가내용이나 1인당 운영비 등을 산정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무분별하게 인상하였는지 여부 등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제19조(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비용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대손상각비
5. 기타 사업외비용

해설

사업외비용이란 자치단체 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정책사업 등의 사업이나 활동 등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특정 세부사업에 배부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불합리한 경비 또는 임시 우발적(special and extraordinary items)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함

제20조(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감액손실환입
3. 자산처분이익
4. 대손충당금환입
5. 기타 사업외수익

해설

- 1) 사업외수익은 교환거래 수익이지만 비정상적이고 임시 우발적인 사건으로 발생되어 서비스 제공대가로 받는 요금수익이라 볼 수 없는 수익을 말함
- 2) 이러한 성격의 수익이라도 자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예, 직영 공기업 특별회계 중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제21조(재정운영결과) ①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 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소모된 자원의 차이 즉, 자원의 사용결과를 의미한다. 자원이 남는 경우에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재정집행 결과에 의한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은 아니다.

③ 사업형 회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달성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설

- 1)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빼서 계산하며 양수(+)인 경우에는 원가가 수익을 초과함을 표시함
- 2) 기업회계의 당기순손익은 경영성적을 표시하는 지표이지만 정부회계 특히 행정형 회계에서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집행 결과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의 의미로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니며 자원의 절약(saving)이나 선사용(dis-saving)의 의미임
- 3) 특히 비용이 수익보다 작아 잉여가 발생한 경우에 집행주체는 성과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원인 발생에 대하여 해명하여야 함
- 4) 자본예산 집행에 따른 잉여 이외에 예산의 지연집행이나 이월, 예산의 부적절한 과다편성, 수익의 부적절한 예측 등 그 원인을 해명하여야 함

제22조(일반수익) ①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지방세수익
2. 과태료수익
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수익
4.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5. 일반 부담금수익
6. 지방교부세수익
7. 재정보전금수익
8. 조정교부금수익
9. 기타 일반수익

②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 회계실체, 용도나 사업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해설

- 1) 일반수익은 비교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사업수익에서 설명한 보조금이나 특정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을 제외하고, 비교환거래에 관련된 수익은 모두 이에 해당함
- 2) 세금이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함
- 3) 일반수익은 주민 모두가 공평하게 편익을 볼 수 있는 재원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익자가 부담한 요금이나 정부나 상급자치단체 등에서 부담한 특정 사업비 등을 제외한 비용은 자체에서 조달한 재원으

로 충당하며 이 내용은 자치단체별 재원 배분을 추구하는 면에서도 중요 정보가 됨

- 4) 사업형 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기타 부담금 등의 수익으로 서비스 제공대가가 아닌 점에서 사업수익과 차이가 있음
- 5)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와 같이 주차장 특별회계나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지 말고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함

제3절 원가정보의 활용 및 관리 해설

제23조(원가시스템의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뢰성 있게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시스템은 사업관리자가 담당 사업의 원가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 1) 재정관리 인프라인 회계정보에 의하여 사업관리자는 사업수행중의 계획과 실제집행, 예산과 실제집행 간의 상이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 등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하거나 외부수요에 맞게 조정하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집행을 하게 되며 이 점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편익이 됨
- 2) 또한 기관의 관리운영비 집행의 경우에도 매월 또는 매분기 당초 목표한 예

- 산대로 집행하는지, 사치나 낭비가 없는지, 연간 절약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의 중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서 사전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음
- 3) 이러한 정보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그 관서의 실정에 맞게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제24조(원가정보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원가시스템에서 산출된 원가정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보이용자의 원가 계산 관여 정도 및 원가정보 활용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 1) 원가정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관리에도 활용하지만, 금년 발생원가는 다음해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의 기초정보가 되며 장기 계획수립에도 중요한 기초정보자료가 됨
- 2) 원가정보는 특정 사업의 연도 간 비교 등 의사결정이나 지표개발 및 통계 목적 사용 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유지 보관하여야 함
- 3) 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사업별 원가정보는 사업관리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회계정보 중에는 보안유지나 불필요한 접근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접근 및 이용체제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제25조(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의한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를 작성, 재정운영보고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에서는 각 사업별로 심사시 제시된 사업목적, 사업편익,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과 실제 집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하되 사업비는 이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당해 사업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 등과 재무회계 정보의 건설중인자산 계정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입원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이나 관광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요 예산사업으로 자체 예산심사를 거쳐 마련한 사업으로 의회에 별도 보고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위 주요사업 추진보고서에 준한 보고서를 작성, 다음 해 예산심의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해설

-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나 의회의 회계책임성을 소명하고 의회나 시민단체의 평가를 돕기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2) 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서는 재정운영보고서와 달리 비재무적인 내용도 포함되며 재정사업 추진의 성과를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보고서임. 이 보고서에 의하여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사업을 어떻게 집행하였으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회계책임을 설명할 수 있음

- 3) 재정사업이 당초 예상한 편익이나 산출을 제대로 달성 하고 있는지, 당초 예상한 투입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여 사업관리자의 사업관리에도 활용하고 의회 등에 결산 및 예산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임
- 4) 주요 재정사업 등의 추진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

00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 계 획 | | | | | | 실 적 | | | | | |
|-----|-------------|-------|----|-----|----|----|-----|-------|----|-----|----|----|
| | 총물량 (목표) | 사업비총액 | | 사업비 | | 진도 | 총물량 | 사업비누계 | | 사업비 | | 진도 |
| | |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 투자 | 비용 | 투자 |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5) 위 실적보고서상의 사업비 총액은 재정 투융자 심사시에 제출한 사업비 총액임. 투자(자본적 지출금액)와 비용(당해연도의 순투입비용)에 대한 실적상의 사업비는 사업비 누계액과 당해 연도의 투자와 비용금액을 구분해서 작성할 필요가 있음
- 6) 각 개별사업의 부속설명서에서는 재정투융자 심사시 제시된 사업목적과 물량, 사업편익,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 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과 함께 실제 집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한 사업별 명세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때의 사업비는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당해 사업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 등과 재무회계 정보의 건설중인 자산 계정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입원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함
- 7) 또한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이나 관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함

제26조(원가정보의 활용)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단위당 원가정보(서비스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를 종사인원수, 고객수, 생산량, 처리량, 면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말한다)를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 여부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가정보는 사업추진부서의 성과목표 제시 및 목표 달성여부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원가정보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원소모 및 그 사업에 의한 편익의 예측·계획과 실제·실적의 비교 등에 의한 재정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해설

- 1) 단위당 원가는 원가나 순원가 또는 관리운영비를 종사인원수, 고객수, 생산량, 처리량, 면적 등을 기준을 산출한 것이며 이는 각 자치단체 간 비교나 당해 자치단체의 전년도의 비교 등을 통하여 투입과 산출을 표시하는 효율성의 검증이나 생산성 향상 여부의 검토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2) 원가정보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즉, 사업추진 부서의 성과목표를 정하는 데 원가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의 달성여부에 의하여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음. 즉,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3) 또한 원가정보는 사업의 자원투입액인 소모액과 그 사업의 재무적 편익의 예측, 계획과 실제 실적의 비교에 활용하여 사업관리나 다음해 재정사업 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음
- 4) 아울러 각 세부사업의 원가정보는 예산회계 정보와 함께 다음해 예산편성 기초자료에도 활용할 수 있음

제27조(원가정보 활용에 대한 보상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이나 원가절감을 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해설

각 자치단체에서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원가절감을 기한 경우에는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이를 추구하도록 하는 데 있음

제28조(적용예외) 각 자치단체의 장은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예외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각 자치단체에서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이나 여건상 준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을 설정한 것임

제29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목적으로 월,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유예) 제3조 제1항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이 준칙의 적용을 유예한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1.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행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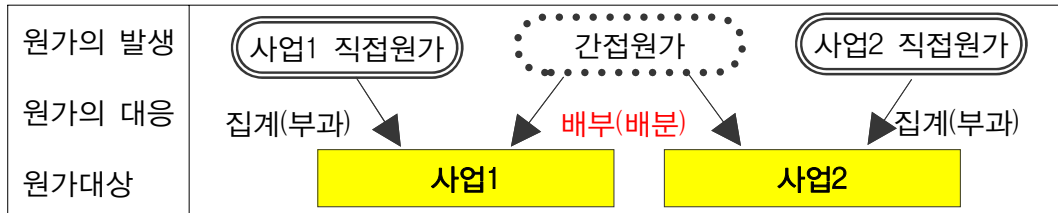
- 현행 재정운영보고서*는 사업별 원가정보 미포함, 의회의 예산심의나 지역주민의 예산구조에 대한 이해 제고 미흡

* 구조 : 비용(인건비, 운영비 등) / 수익(자체조달수익 등) / 운영차액 (수익-비용)

추진 경과

- 「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제정('10.12), 「자치단체 회계기준」 개정('11.5)
- '10회계연도 원가회계 시범운영('11.7~10) : 11개 지자체 선정(광역3, 기초8)
 - 원가계산준칙 적용, 사업순원가를 표시하는 재정운영보고서 작성 등
 - * 사업순원가 = 사업총원가(사업 직접·간접원가) - 사업수익(서비스수익, 보조금수익)
- 사업수익(세외수입) 관리개선, 직영공기업 사업구조화 개선 등 원가회계제도 시행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11.9~12)

《 원가계산 원리 》 직접원가는 사업별로 집계, 간접원가는 관련사업에 배부하여 원가 계산



원가정보 활용

- 예산절감 및 비용통제
 - 특정사업 시계열 분석, 유사사업 단체별 원가차이 분석 등으로 예산절감
- 서비스 가격 및 요금결정
 - 서비스 원가회수 여부, 자치단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정보제공
- 원가정보를 성과목표와 비교하여 성과평가 자료로 활용 등

향후 계획

- 원가회계제도 기본계획 수립 : '12.3~4월
- 전 자치단체 시범운영 : '12.7~12월 전 자치단체 전면시행 : '13.1월~

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 | |
|-------------------------------|--------------|----|
| | 2006. 10. 17 | 시행 |
| | 2007. 12. 26 | 개정 |
| | 2009. 12. 31 | 개정 |
| (2012. 1. 1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219호) | 2011. 5. 20 |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반적으로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0>

1.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2.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3.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4. “회계실체”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개별 회계실체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최소 단위를 말한다.

나. 유형별 회계실체 : 개별 회계실체를 그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그 유형은 제6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다.

다. 통합 회계실체 :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모두 통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위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 (재무보고의 목적) ①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정상태·재정운영성과·현금흐름 및 순자산 변동에 관한 정보
2. 당기(當期)의 수입이 당기(當期)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지에 대한 기간간 형평성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 (일반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를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 (유형별 회계실체의 구분 등) ① 유형별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구분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5.20>

② 회계실체는 그 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회계실체와 사업형 회계실체로 구분할 수 있다.

1. 행정형 회계실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이고 고유한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2. 사업형 회계실체는 개별적 보상관계가 적용되는 기업적인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실체를 말한다.

③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1.5.20]

제2장 재무보고서

제7조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된다.

제8조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재정운영보고서·현금흐름보고서·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제9조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기타 특별회계·기금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② 유형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유형별 회계실체 안에서의 내부거래는 상계하고 작성한다. <개정 2011.5.20>

③ 개별 회계실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안의 다른 개별 회계실체와의 내부거래를 상계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내부거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회계실체 등과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1.5.20.>

④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회계정책상의 변화 등 회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5.20>

⑤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거래로 처리한다. <개정 2011.5.20>

제3장 재정상태보고서

제10조 (재정상태보고서) ①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 시점의 회계실체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1.5.20>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상태보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제11조 (자산·부채 및 순자산의 정의) ① 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②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목개정 2007.12.31]

제12조 (자산과 부채의 인식기준) ① 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계실체에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문화재, 예술작품, 역사적 문건 및 자연자원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필수보충정보의 관리책임자산으로 보고한다.

③ 부채는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개정 2007.12.31>

제13조 (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

보고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應忘計定)은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자산의 분류)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 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삭제 <2009.12.31>

제15조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6조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7조 (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임목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 (주민편의시설)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19조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제20조 (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및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1조 (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제22조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3조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후에 만기가 되는 차입부채로서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24조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에수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제25조 (순자산의 분류) ①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② 고정순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및 지방채증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목적이나 적립성기금의 원금과 같이 그 사용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재원과 관련된 순자산을 말한다.

④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제4장 재정운영보고서

제26조 (재정운영보고서) ①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② 재정운영보고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 가목에 따른 총원가에서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 가. 총원가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사업에 배부한 원가를 뺀 것
 - 나. 사업수익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얻은 수익
 2. 재정운영순원가 : 제1호에 따른 사업순원가에서 가목 및 나목의 비용은 더하고, 다목의 수익을 빼서 표시한다.
 - 가. 관리운영비 :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 나. 비배분비용 :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사업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
 - 다. 비배분수익 : 임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수익 및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제1호나목의 사업수익에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수익
 3. 재정운영결과 : 제2호의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제30조에 따른 일반수익을 뺀 것
-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보고서에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총원가와 같은 항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수익을 표시할 때 그 세부 항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과목의 구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20]

제27조 (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이나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관리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①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생긴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서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교환거래로 생긴 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생기는 지방세,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해당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② 비용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교환거래에 따르는 비용은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으로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문이나 다른 공공부문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2. 비 교환거래에 의한 비용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서 가치의 이전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제29조 (재정운영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재정운영보고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표시한다. <개정 2011.5.20>

②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여야 하며,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목의 중요성은 금액과 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1.5.20.>

제29조의2 (원가계산) ① 원가는 회계실체가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 원가의 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5.20.]

제30조 (일반수익의 분류) 일반수익은 재원조달의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조달수익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 권한과 자체적인 징수활동을 통하여 조달한 수익
2. 정부간이전수익 : 회계실체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
3. 기타수익 :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익 외의 수익

[전문개정 2011.5.20]

제31조 삭제 <2011.5.20>

제32조 삭제 <2011.5.20>

제33조 삭제 <2011.5.20>

제34조 삭제 <2011.5.20.>

제5장 현금흐름보고서

제35조 (현금흐름보고서)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로서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된다.

② 현금흐름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36조 (현금흐름의 구분) ① 경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투자활동은 자금의 용자와 회수, 장기투자증권·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 시설·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말한다.

③ 재무활동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 지방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말한다.

제37조 (현금흐름보고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중의 순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 현재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회계연도 중의 증가나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적는다. 다만, 거래가 잦아 총 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순증감액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현물출자로 인한 유형자산 등의 취득, 유형자산의 교환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거래에 대하여는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6장 순자산변동보고서

제38조 (순자산변동보고서) ①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을 기재한다. <개정 2011.5.20>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지방자치단

체의 재무제표 중 순자산변동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1.5.20>

제39조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 ① 순자산의 증가사항은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 순자산의 감소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7장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제40조 (결산총평) ①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머리말, 재무분석 등의 설명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② 머리말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주요특징사항 및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7.12.31., 2009.12.31>

③ 주요특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요, 재무보고와 관련한 회계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④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은 당해연도 및 직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활동의 비교 및 변화원인에 관한 설명 등을 말한다.

⑤ 재무분석은 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과 재정상황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무분석지표 및 지표에 관한 분석내용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제41조 (주석) ① 주석(註釋)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註釋)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1.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간의 주요 거래내용
2. 삭제 <2009.12.31>
3.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보증의 내용
4.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5. 채무부담행위 및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종류와 구체적 내용
6. 무상사용허가권이 주어진 기부채납자산의 세부내용
7.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필수보충정보) 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

② 필수보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1.5.20>

1. 예산결산요약표
 2.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 2의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일반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
 - 2의3.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 회계실체(일반회계는 제외한다)의 재정운영보고서
 3. 관리책임자산
 4.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5.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③ 제2항의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

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43조 (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제공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제44조 (결산총평 등의 작성지침) 제40조부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총평, 주석(註釋),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과 서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1>

제8장 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45조 (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보고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 기부채납, 관리전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에 기재하는 자산은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감액내역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당해 자산의 순 실현가능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6조 (미수세금 등의 평가) ① 미수세금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미수세금 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대손충당금의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② 미수세외수입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48조 (장기투자증권의 평가) 장기투자증권은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9조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의 평가) ①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은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중 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회기반시설 중 유지보수를 통하여 현상이 유지되는 도로, 도시철도, 하천부속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과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이유를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1조 (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나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당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52조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 자산취득 이후의 지출 중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당해 자산을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경상적 지출로 처리한다.

제53조 (부채의 평가기준) 부채의 가액은 회계실체가 지급의무를 지는 채무액을 말하며, 채무액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

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지방채증권의 평가) ① 지방채증권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되, 발행가액은 지방채증권 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뺀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 지방채증권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지방채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으로 하고, 할인 또는 할증 발행차금은 증권 발행시부터 최종 상환 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 등으로 상각 또는 환입하고 그 상각액 또는 환입액은 지방채증권에 대한 이자비용에 더하거나 뺀다.

제55조 (퇴직급여충당 부채의 평가) ①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12.31>

②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산정내역,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6조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따른 평가) ①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의 현재가치는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받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절한 할인율은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채무의 명목가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적용한 할인율, 기간 및 회계처리방법 등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한다.

제57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①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

채는 회계연도 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재정상태보고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화폐성 외화자산과 화폐성 외화부채는 외화예금, 외화융자금, 외화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금액이 계약 및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제58조 (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① 리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리스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며,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고, 운용리스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③ 금융리스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여 감각상각하고, 운용리스는 리스료를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09.12.31>

제59조 (우발상황) ① 우발상황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 우발상황에는 진행 중인 소송사건,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배상책임 등이 포함되며, 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1.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우발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2.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
3. 우발이익의 발생이 확실하고 그 이익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

제60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기준을 폐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1.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이 해당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의 수정은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회계기준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2.31>

1. 중대한 오류 :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운영보고서에 반영

③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61조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 ①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재정상태보고서일 후 발생한 사건은 회계연도의 말일인 재정상태보고서일과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일 현재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부칙 <제348호, 2006.10.17>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9조제3항·제35조 및 제56조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재정상태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시재정상태보고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③(사회기반시설의 구분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 계상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 중 이미 조사된 내역은 주석(註釋)으로 공시할 수 있다.

부칙 <제414호, 2007.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43조 및 제4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124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호, 2011.5.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2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5.20>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연도 20××년×월×일 현재
직전연도 20××년×월×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 | | 직전연도(20××년) | | | | | |
|---------------------|-------------|----------|-------|-------------|-------|---|-------------|----------|-------|-------------|-------|---|
|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 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 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 자산 | | | | | | | | | | | | |
| I. 유동자산 | | | | |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 | | | | | | |
| 단기금융상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투자자산 | | | | | | | | | | | | |
| 장기금융상품 | | | | | | | | | | | | |
| 장기대여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일반유형자산 | | | | | | | | | | | | |
| 토지 |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 건물감가상각누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주민편의시설 | | | | | | | | | | | | |
| 도서관 | | | | | | | | | | | | |
| 주차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사회기반시설 | | | | | | | | | | | | |
| 도로 | | | | | | | | | | | | |
| 도시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I.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 | |
| 보증금 | | | | | | | | | | | | |
| 무형자산 | | | | | | | | | | | | |
| 자산 총계 | | | | | | | | | | | | |
| 부채 | | | | | | | | | | | | |
| I. 유동부채 | | | | | | | | | | | | |
| 단기차입금 | | | | | | | | | | | |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장기차입부채 | | | | | | | | | | | | |
| 장기차입금 | | | | | | | | | | | | |
| 지방채증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 |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채 총계 | | | | | | | | | | | | |
| 순자산 | | | | | | | | | | | | |
| I. 고정순자산 | | | | | | | | | | | | |
| II. 특정순자산 | | | | | | | | | | | | |
| III. 일반순자산 | | | | | | | | | | | | |
| 순자산 총계 | | | | | | | | | | | | |
| 부채와 순자산 총계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5.20>

재정운영보고서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직전연도(20××년) | | |
|---|-------------|------|-----|-------------|------|-----|
|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I. 사업순원가 | | | | | | |
| 일반공공 행정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 | |
| II. 관리운영비 | | | | | | |
| 1. 인건비 | | | | | | |
| 급여 | | | | | | |
| ... | | | | | | |
| 2. 경비 | | | | | | |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 | | | | |
| ... | | | | | | |
| III. 비배분비용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IV. 비배분수익 | | | | | | |
| 자산처분이익 | | | | | | |
| 기타이익 | | | | | | |
| ... | | | | | |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 | | | | |
| VI. 일반수익 | | | | | | |
| 1. 자체 조달수익 | | | | | | |
| 지방세수익 | | | | | | |
| 경상세외수익 | | | | | | |
| ... | | | | | | |
| 2. 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지방교부세수익 | | | | | | |
| 보조금수익 | | | | | | |
| ... | | | | | | |
| 3. 기타수익 | | | | | | |
| 전입금수익 | | | | | | |
| 기타 재원조달 | | | | | | |
| ... | | | |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5.20>

현금흐름보고서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 | | 직전연도(20××년) | | | | | |
|--------------------------------------|-------------|--------|------|-----------|------|---|-------------|--------|------|-----------|------|---|
|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회계 | 지방공기업특별회계 | 내부거래 | 계 |
| I.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 | | | | | | | | | | |
| 1.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 | | | | | | | | | | |
| 자체 조달수익 | | | | | | | | | | | | |
| 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경상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 | | | | | | | | | | |
| 인건비 | | | | | | | | | | | | |
| 운영비 | | | | | | | | | | | | |
| 정부간이전비용 | | | | | | | | | | | | |
| 민간등이전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 | | | | | | | | |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 | | | | | | | | | | |
| 대여금의 회수 |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의 처분 | | | | | | | | | | | | |
| 일반유형자산의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 | | | | | | | | | | |
| 대여금의 상환 | | | | | | | | | | | | |
| 장기투자증권의 취득 | | | | | | | | | | | | |
| 일반유형자산의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 | | | | | | | | | |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 | | | | | | | | | | |
| 차입금의 차입 | | | | | | | | | | | | |
| 지방채증권의 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 | | | | | | | | | | |
| 차입금의 상환 | | | | | | | | | | | | |
| 지방채증권의 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현금의 증가(감소)(I + II + III) | | | | | | | | | | | | |
| V. 기초의 현금 | | | | | | | | | | | | |
| VII. 기말의 현금(IV + V)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5.20>

순자산변동보고서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 | | 직전연도(20××년) | | | | | |
|-------------------------------|-------------|---------|-------|------------|-------|---|-------------|---------|-------|------------|-------|---|
|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회계 | 기금 회계 |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 내부 거래 | 계 |
| I. 기초순자산 | | | | | | | | | | | | |
| II. 재정운영결과 | | | | | | | | | | | | |
| III. 순자산의 증가 | | | | | | | | | | |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 | | | | |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V. 순자산의 감소 | | | | | | | | | | | | |
| 전기오류수정손실 | | | | | | | | | | | |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 기말순자산 (I-II+III-IV)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5.20>

재정운영보고서(성질별)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 | 직전연도(20××년) | | | | |
|-------------------------|-------------|----------|-------|--------------|---------|-------------|----------|-------|--------------|---------|
|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 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 특별회 계 | 내부 거래 계 | 일반 회계 | 기타 특별 회계 | 기금 회계 | 지방 공기업 특별회 계 | 내부 거래 계 |
| I. 인건비 | | | | | | | | | | |
| 급여 | | | | | | | | | | |
| 복리후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II. 운영비 | | | | | | | | | | |
| 소모품비 | | | | | | | | | | |
| 지급수수료 | | | | | | | | | | |
| 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III. 정부간이전비용 | | | | | | | | | | |
| 시도비보조금 | | | |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IV. 민간등이전비용 | | | | | | | | | | |
| 민간보조금 | | | | | | | | | | |
| 출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V. 기타비용 | | | |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 | |
| 자산감액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VI. 비용총계 | | | | | | | | | | |
| VII. 자체조달수익 | | | | | | | | | | |
| 지방세수익 | | | | | | | | | | |
| 경상세외수익 | | | | | | | | | | |
| 임시세외수익 | | | | | | | | | | |
| VIII. 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 | |
| 지방교부세수익 | | | | | | | | | | |
| 보조금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IX. 기타수익 | | | | | | | | | | |
| 전입금수익 | | | | | | | | | | |
| 기부금수익 | | | | | | | | | | |
| ... | | | | | | | | | | |
| X. 수익총계 | | | | | | | | | | |
| XI. 재정운영결과(VI-X)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5.20>

재정운영보고서(일반회계)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직전연도(20××년) | | |
|---|-------------|------|-----|-------------|------|-----|
|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I. 사업순원가 | | | | | | |
| 일반공공 행정 | | | | | | |
|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
| ... | | | | | | |
| II. 관리운영비 | | | | | | |
| 1. 인건비 | | | | | | |
| 급여 | | | | | | |
| ... | | | | | | |
| 2. 경비 | | | | | | |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 | | | | |
| ... | | | | | | |
| III. 비배분비용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IV. 비배분수익 | | | | | | |
| 자산처분이익 | | | | | | |
| 기타이익 | | | | | | |
| ... | | | | | |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 | | | | |
| VI. 일반수익 | | | | | | |
| 1. 자체 조달수익 | | | | | | |
| 지방세수익 | | | | | | |
| 경상세외수익 | | | | | | |
| ... | | | | | | |
| 2. 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지방교부세수익 | | | | | | |
| 보조금수익 | | | | | | |
| ... | | | | | | |
| 3. 기타수익 | | | | | | |
| 전입금수익 | | | | | | |
| ... | | | |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할용품)]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5.20>

재정운영보고서(회계)

해당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직전연도 20××년×월×일부터 20××년×월×일까지

지방자치단체명

(단위 : 원)

| 과 목 | 해당연도(20××년) | | | 직전연도(20××년) | | |
|---|-------------|------|-----|-------------|------|-----|
|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I. 사업순원가(00 기능) | | | | | | |
| 정책사업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세부사업 | | | | | | |
| 단위사업 | | | | | | |
| 세부사업 | | | | | | |
| . . . | | | | | | |
| II. 관리운영비 | | | | | | |
| 1. 인건비 | | | | | | |
| 급여 | | | | | | |
| . . . | | | | | | |
| 2. 경비 | | | | | | |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 | | | | |
| . . . | | | | | | |
| III. 비배분비용 | | | | | | |
| 자산처분손실 | | | | | | |
| 기타비용 | | | | | | |
| . . . | | | | | | |
| IV. 비배분수익 | | | | | | |
| 자산처분이익 | | | | | | |
| 기타이익 | | | | | | |
| . . . | | | | | | |
|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 | | | | | |
| VI. 일반수익 | | | | | | |
| 1. 정부간이전수익 | | | | | | |
| 지방교부세수익 | | | | | | |
| 보조금수익 | | | | | | |
| . . . | | | | | | |
| 2. 기타수익 | | | | | | |
| 전입금수익 | | | | | | |
| 기타 재원조달 | | | | | | |
| . . . | | | | | | |
|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행정안전부 훈령 185호, 2010. 12. 7 제정

행정안전부 훈령 203호, 2011. 12. 2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 회계기준”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에 따른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가대상”이란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는 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으로서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말한다.
2. “원가의 배부”란 회계연도 기간에 발생한 원가를 각 원가 집계 대상에 대응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원가계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가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원가대상으로 집계하고 배부하여 원가를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준칙은 지방회계기준 제2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회계실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준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지방회계기준 제26조에 따른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③ 이 준칙은 특정한 사업 등의 원가분석 관리방법의 개선 등 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원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원가계산의 목적)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의 목적은 다음과 같고와 같다.

1. 사업관리자나 예산편성 관계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사업 등에 대한 원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가와 산출물이나 성과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2. 사용자 부담기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원가회수 정도와 독립채산제의 운영 여부에 관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사업관리와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도모하게 한다.
3. 성과목표 수립이나 평가 등 성과관리 중심의 재정운영이나 특정 사업이나 활동의 효율적 수행 여부, 관리운영 방법의 능률성 검증 등 의사결정 자료로 사용하게 한다.
4. 사업 등의 원가정보나 관리운영비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더 나은 회계책임성 평가를 하도록 하며 아울러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제5조(회계실체의 구분과 원가계산) 지방회계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형 및 사업형 회계실체 구분에 따라 사업 등의 원가계산 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원가계산의 일반원칙) ① 원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계산한다.

- ② 원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가 사업예산 체계에 따라 집행한 예산을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다.
- ③ 원가 집계대상별로 분리 가능한 원가는 직접 부과하고, 분리 가능하지 않은 원가는 그 발생의 경제적 효익 또는 인과관계에 비례하여 배부하거나 원가의 특성을 반영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배부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는 원가계산준칙에 의거 원가계산을 수행하고, 채택한 원가계산방법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계산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원가의 계산

제7조(원가대상의 설정) ① 원가대상은 의사결정이나 관리통제가 필요하여 원가를 개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부사업이 여러 종류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면 각 재화 또는 용역을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③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원가대상으로 설정할 수 없다.

제8조(사업총원가) ① 사업의 총원가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직접원가의 합계에서 배부 받은 간접원가를 더하고, 다른 부서로 배부한 간접원가는 빼서 계산한다.

② 다른 부서에서 배부 받거나 배부한 배부원가는 특정 사업 등의 경비를 특정부서에서 집행하였으나 그 부담이 다른 사업 등과도 관련되어 집행비용을 일정한 기준으로 배부한 경우 등에 발생된다.

제9조(직접원가) ①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직접 제품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2.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 및 이전비용
3. 사업 추진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를 포함한다)

② 직접원가는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한다.

제10조(간접원가) ① 간접원가는 여러 사업의 추진에 사용되어 원가대상에 직접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원가를 말한다.

② 간접원가는 적용가능성, 원가대상과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③ 간접원가에 포함되지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에 포함되는 것은 원가대상에 배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목적으로는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른 간접원가의 배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하나를 적용한다.

1. 인원수 또는 인건비
2. 원가대상의 직접원가
3. 사용면적 또는 자산금액
4.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
5.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12조(사업순원가) ① 사업순원가는 원가대상의 사업총원가에서 그 원가대상의 사업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사업의 추진에 투입한 자원소모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형 회계실체의 사업순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을 서비스의 원가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3조(사업수익) ① 사업수익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직접 발생한 수익과 국가 등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익 등을 말한다.

② 사업수익은 서비스 요금 수익과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제14조(서비스 요금수익) ① 서비스 요금수익은 재화·서비스의 판매수익 등과 같이 서비스의 수혜자로부터 그 대가로 받는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사용료수익, 수수료수익, 사업장생산수익, 의료사업수익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
2. 수입대체경비 수익
3. 기타 서비스요금수익 : 재산임대료수익, 경상적세외수익의 사업수익, 국·시·도유재산매각수수료수익,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재고자산매각이익

②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금 수익, 변상금, 위약금 등과 같이 서비스 제공의 대가가 아닌 비교환수익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한다.

③ 서비스요금 수익이지만 원가대상별로 식별하기 곤란하고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 ① 보조금 등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전받은 보조금 및 특정 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등 민간으로부터의 이전수익을 말한다.

② 특정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운영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다만, 특정 사업에 사용될 자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보조 목적의 보조금 등(이하 “자본보조금”이라 한다)은 사업수익에서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항목으

로 처리한다.

③ 특정 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등에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이 같이 포함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운영보조금은 사업수익으로 본다.

제16조(재정운영순원가) ①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을 더하고 비배분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실체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사업의 추진 및 행정조직 운영 등 그 실체의 정상적 활동에 사용된 원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사업형 회계실체의 재정운영순원가는 서비스 제공 및 조직 운영 등 그 실체의 활동에 사용된 원가 및 기타경비의 회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17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조직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기본 경비 등 운영경비를 말한다.

② 일반행정 기능에서 사업 등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의 일반관리 업무에 관련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서 시민 등이 직접 편익을 보는 경비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처리한다.

③ 서비스 요금책정의 기초자료 작성, 관리방법의 개선, 특정 업무의 외주방식 검토, 타 자치단체와 비교 등을 위한 관리회계에서는 관리운영비도 간접비로서 배부하여 의사결정 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관리운영비의 항목 구분)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인건비 : 급여, 복리후생비 등
2. 운영비 : 소모품비, 도서구입및인쇄비, 홍보및광고비, 지급수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연료비, 수선유지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감가상각비 등

제19조(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임시 우발적으로 발생되어 사업 등에 배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비용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대손상각비
5. 기타 사업외비용

제20조(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교환거래로 발생한 수익이지만 사업 등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수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감액손실환입
3. 자산처분이익
4. 대손충당금환입
5. 기타 비배분수익

제21조(재정운영결과) ①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행정형 회계의 재정운영 결과는 유입된 자원에서 사용·소모된 자원의 차이 즉, 자원의 사용결과를 의미한다. 자원이 남는 경우에도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재정집행 결과에 의한 성과물로서 나타나는 잉여금은 아니다.

③ 사업형 회계에서는 서비스 제공 등에 의한 독립채산제의 달성여부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22조(일반수익) ① 일반수익은 사업수익이나 비배분수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교환 거래 수익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지방세수익
2. 과태료수익
3. 과징금및이행강제금수익
4. 변상금및위약금수익
5. 일반 부담금수익
6. 지방교부세수익
7. 재정보전금수익
8. 조정교부금수익
9. 징수교부금수익
10. 전입금 수익
11. 기타 일반수익

② 목적세나 과징금, 부담금의 경우 특정 회계실체, 용도나 사업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반수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장 원가정보의 활용 및 관리

제23조(원가시스템의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뢰성 있게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시스템은 사업관리자가 담당 사업의 원가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원가정보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원가시스템에서 산출된 원가정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보이용자의 원가 계산 관여 정도 및 원가정보 활용 수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주요 재정사업 등의 사업추진보고) ① 각 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에 따른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를 작성, 재정운영보고서의 필수보충정보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재정사업 추진보고서에서는 각 사업별로 심사시 제시된 사업목적, 사업편익,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도간 사업비, 기대효과 등과 실제 집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표시하되 사업비는 이 원가계산준칙에 의한 당해 사업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 등과 재무회계 정보의 건설중인자산 계정 등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투입원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예상한 참가인원이나 관광객,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주요 예산사업으로 자체 예산심사를 거쳐 마련한 사업으로 의회에 별도 보고한 사업 등에 대하여도 위 주요사업 추진보고서에 준한 보고서를 작성, 다음연도 예산심의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원가정보의 활용) 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위당 원가정보(서비스의 총원가, 사업수익 및 순원가를 종사인원수, 고객수, 생산량, 처리량, 면적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을 말한다)를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 여부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원가정보는 사업추진부서의 성과목표 제시 및 목표 달성여부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원가정보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원소모 및 그 사업에 의한 편익의 예측·계획과 실제·실적의 비교 등에 의한 재정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원가정보 활용에 대한 보상 등) 행정안전부 장관은 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이나 원가절감에 노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제28조(적용예외)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예외적용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원가계산기간) 원가계산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관리목적으로 월,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세분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유예) 제3조 1항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이 준칙의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준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준칙은 2012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유예) 제3조 1항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이 준칙의 적용을 유예한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extending across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extending across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cover most of the page's width.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extending across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cover most of the page's width.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extending across the page, providing a template for writing a memo.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cover most of the page's width.

재 무 회 계

(발생주의 복식부기)

2012년 2월 일 인쇄
2012년 2월 일 발행

편 집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
집 필 :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박 형 우
 행정사무관
검 토 : 충청북도 민관영
교 정 : 제주특별자치도 고선일
인 쇄 :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인쇄사업소
 TEL : (02) 421-8418
 FAX : (02) 422-8419

※ 이 책자의 전문(全文)은 지방행정연수원 홈페이지 (www.logodi.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문의 : 031-250-5244 지방행정연수원 기획협력과 과 장 서주현
 서기관 장문호
 담 당 김혜정
 <비매품>